

【특집】

일제강점하 ‘동지장(同志葬) 문화’의 출현 배경과 성격*

변 은 진**

- I. 머리말
- II. ‘동지장 문화’의 출현 배경
- III. ‘동지장 문화’의 현황과 성격
- IV. 맺음말

「국문 초록」

한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인 장례는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애도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치리지는데, 이는 상호 유대관계의 상실감을 바탕으로 한 남겨진 자들의 ‘윤리적 책임감’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관습적 윤리성에 기초한 ‘슬픔’과 ‘애도’의 책무마저 훼손당하는 조건이 계속되는 속에서,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의 시기가 열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자 문화적 형태가 바로 ‘단체장’과 ‘동지장’으로 대표되는 ‘동지장 문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글은 일제강점기에 ‘동지장’이라는 용어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것이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양상, 그리고 그 성격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했다. 먼저 ‘동지장 문화’가

* 이 연구는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교수

출현하게 된 배경에 대해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보았다. 첫째, 일제 당국의 ‘공적 애도’ 금지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제국 일본’이라는 국가권력에 희생된 수많은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 1920년대 중반경 등장했다. 둘째, ‘김윤식 사회장 사건’을 필두로 한 사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의 영향으로 ‘애도할 만한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애도의 배분’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민족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등이 중시되었다. 셋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장례비용 등의 공적 마련이 요구되었다. 다음으로 일제 강점기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동지장 추진 사례 24건(1927~1936)과 단체장 추진 사례(1925~1932) 29건을 중심으로 그 시기, 지역, 금지 상황, 추진 양상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동지장이나 단체장과 같은 공적 애도 의식은 일종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무시 경험’이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집단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미론적 다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음을 확인했다.

주제어 : 공적 애도, 동지장(同志葬), 단체장(團體葬), 사회장(社會葬), 애도의 배분, 권리를 가질 권리, 일제강점기

I. 머리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인간은 장례 의식을 행하는 동물’이라 했듯이, 장례는 “인생의 마지막에 치러지는 통과의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이합(離合) 의식”이다.¹⁾ 상장례(喪葬禮)는 민족과 나라마다 종교적 관

1)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장례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006, 3쪽 및 29쪽. “장례는 이승과 분리된 망자의 혼이 일정한

습이나 전통에 따라 다양하며, 죽음을 사고하는 방식이나 태도도 다르게 나타난다.²⁾ 하지만 이 의례가 죽은 자와 사적·공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남겨진 자들’에 의해 치러지고,³⁾ 그 바탕에는 ‘슬픔’과 ‘애도’의 감정이 있다는⁴⁾ 점만큼은 동일하다. 이러한 감정의 기초에는 ‘나와 너의 유대관계’에 대한 상실감이 자리잡고 있어 남겨진 자들은 ‘윤리적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⁵⁾

그런데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정도와 방식, 이를 형상화한 ‘장례’의 형식과 내용은 생전 그의 성품이나 활동, 국가나 사회에 대한 기여도, 죽음에 이르는 과정과 사회적인 처지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따라

전이기를 안전하게 보내고 사자(死者)의 세계에 통합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데, 이 의례는 ‘분리 의례, 전이 의례, 통합 의례’로 구성된다(4쪽).

- 2) 상장례는 “죽음을 처리하는 장사와 고인을 조상신으로 승화하고 상주가 일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담은 ‘상례’를 구체화한 용어”로서 세종대 처음 사용된 ‘관습적 용어’이다(김시덕, 「상장례」,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 이 “죽음의례의 현상은 늘 과거의 전통과 근대의 통제, 그리고 현대의 상업주의가 끊임없이 충돌”한다(이철영, 『근대 이후 유교식 상례의 변화 이해』, 해조음, 2020, 13쪽).
- 3) “한 개인의 죽음을 다루는 상장례는 기본적으로 사적(私的)인 영역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공적(公的)인 차원 또한 갖고 있다. 시신의 처리를 주로 하는 상장례는 사자(死者)가 아니라 남아있는 자들(가족, 친족, 공동체, 국가)에 의해서 진행된다는 점 때문이다. 상장례는 미시적으로 가족과 친족에 의해 주도되지만, 거시적으로 공동체 혹은 국가와도 관련을 맺으면서 사자와 관련을 맺고있는 남은 자들이 사자에 대한 기억, 구성원의 상실이 지닌 의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송현동, 「근대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 2002, 198쪽).
- 4) ‘喪’이라는 글자 자체가 ‘哭(슬피운다) + 亼(없어지다)’이 합성된 회의문자로서(後漢의 許慎, 『說文解字』), “사람을 잃게 되어 애도하는 추모예식”인 장례나 상례는 “망자를 떠나보내는 葬送儀禮가 고별의 핵심”이다(김윤희, 「근현대 상례제도와 상례복식의 문화변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8, 1쪽).
- 5) 주디스 버틀러 지음, 윤조원 옮김,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50쪽.

서 그 정도와 방식을 결정하는 것, 즉 ‘애도할 만한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점은 역사적으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게다가 이러한 애도의 형식과 내용이 남겨진 자들에게 공동의 경험과 기억을 가져다주고, “무엇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앎을 포함하는 것”이 되어 ‘우리’를 형성하고 공공의 결속을 강화하는 데도 기여하게 된다면,⁶⁾ 그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일제의 강점이라는 상황에서 맞이한 수많은 항일운동가의 죽음과 장례 역시 이러한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근대를 살아가면서도 생명과 인권에 대한 기본권조차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식민 지배 아래 학살과 고문치사가 만연해 있던 상황에서도 애도할 만한 죽음인지 아닌지의 문제는 늘 존재했다. 이른바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히 여길 줄 모르는 경관”이 많아 절도죄 등 경범죄자에 대한 고문치사가 빈번히 발생하던 1920~30년대에도⁷⁾ ‘애도의 배분’은 늘 문제시되었다.

1789년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지니고 태어나 생존한다”라고 선언한 이래 인권(人權), 즉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갖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자유는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고, 평등은 “여러 신체들이 함께 나타날 때, 혹은 그 신체들의 행동을 통해 출현의 공간이 만들어질 때 확실히 형성”된다는 논의에서 알 수 있듯

6) 장례는 “死者와 남은 자들, 그리고 남은 자들 사이의 결속을 강화”하여 “개인이나 집단의 삶에 대한 의미부여와 집단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임시정부에서도 원로 독립운동가가 타계하면 “내부 결속과 애국심, 독립의지를 고취”하기 위해 성대한 장례를 치렀다(김광재, 「安泰國의 순국과 장의 - 1920년대 초 上海 한인 장례문화의 일단」, 『역사민속학』 48, 2015, 339쪽).

7) 변은진,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남도문화연구』 47, 2022, 36-39쪽 참조.

이,⁸⁾ 인간의 출생과 생존, 죽음과 기억의 문제는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 가치와도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보통의 국가가 아닌 식민지나 군사독재라는 ‘비정상적’인 상황은⁹⁾ 이러한 정치적 출현 공간을 쉽게 마련할 수 없는 조건의 연속이다. ‘인륜성’은 윤리와 도덕의 집단의식에 기초한 관습성을 토대로 하는데, 그마저 파멸되고 무시되는 상황은 “집단적 ‘인정투쟁’을 위한 도덕적 동기”를 발생시키며, 이러한 도덕적 감정과 경험적 요소들은 ““명예로운 삶’에 대한 집단 특수적 요구”를 불러일으킨다는¹⁰⁾ 점을 생각하게 한다.

이처럼 인간의 본성과 관습적 윤리성에 기초한 ‘슬픔’과 ‘애도’의 책무마저 훼손당하는 조건이 계속되는 속에서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의 시기가 열리면서 그 장을 마련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자 문화적 형태가 바로 ‘단체장(團體葬)’과 ‘동지장(同志葬)’, 즉 ‘동지장 문화’이다. 단체장은 1925년 무렵부터, 동지장은 1927

8) 주디스 버틀러 지음,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130쪽.

9) 악셀 호네프는 식민지를 “상호인정이라는 상호주관적 관계가 기형화된 사회적 상태”로 이해한다. 그는 “즉 서로가 어떤 식이든 상호작용 형태 안에서 존재하기 위해서는 식민지 지배자가 원주민을 인간으로 인정하면서도 무시해야만 하듯이, 원주민들도 ‘인간적 지위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291-292쪽). 프랑스혁명 이래 국민국가와 인권의 관계를 논의했던 한나 아렌트조차도 식민지인의 인권 문제를 깊이 있게 거론하지는 않았다. 난민 문제에 주목한 그녀는 “인권의 문제는 곧 민족 해방의 문제와 풀릴 수 없을 정도로 뒤섞이게” 되었다고 했다(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525쪽).

10) 헤겔의 ‘자연적 윤리성’ 개념과 이를 둘러싼 ‘인정투쟁’의 논의를 참고하였다. “모든 개인이 가족 내부에서 ‘상호애정과 존중’의 실천을 통하여 획득하게 되는 도덕적 감각은 이후에 그가 갖게 되는 인륜적 좋음에 대한 관념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다. 사랑, 권리, 연대라는 인정 형식들은 도덕적 잠재력을 지니고 있고 일정하게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며 이는 사회적 투쟁을 통해 보편화된다(악셀 호네프, 『인정투쟁』, 284쪽 및 319-323쪽 참조).

년부터 신문 기사에서 확인된다. 당시 언론에서 ‘단체장’이라고 한 것은 ‘사회단체장’과 ‘사회단체연합장’을 가리키며, ‘동지장’이라고 한 것은 ‘동지연합장’이나 ‘우인장(友人葬)’¹¹⁾ 등도 포함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 용어들은 8.15 이후에도 모두 공존했다. 이 글에서는 이와 같은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의미로 ‘동지장 문화’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공적 애도를 위한 집단적 인정투쟁의 마지막 형태인 동지장을 중심에 놓되 유사한 문화적 성격을 갖는 단체장까지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근대 이전에도 공장(公葬)으로 국장(國葬), 예장(禮葬, 종친·공신·종1품 이상) 등이 있었고 근대 이후 국민장(國民葬), 사회장(社會葬) 등이 생겨나서 공장은 국장, 국민장, 사회장으로 굳어졌다.¹²⁾ 일제강점기에는 현실적으로 국민장은 어려웠고¹³⁾ 국장과 사회장은 치러졌다. 그런데 1919년 3.1운동 이래 항일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조직화되고 급격히 증가해가면서 주로 국가와 사회의 상층을 대상

11) 우인장은 이관용(李灌鎬, 1894~1933) 장례 등 가끔 보이긴 했으나 주로 일본에서 사용되었던 것 같다.

12) 일제강점기에도 장례를 공장과 사장(私葬)으로 구분하고 공장에 국장, 국민장, 사회장이 있다고 보았다(金明植, 「社會葬은 何?」, 『新生活』 1, 1922.3.1., 49쪽). 1961년 대한민국 정부가 「표준의례」를 제정하면서부터 이것이 확실히 되었다. “사회장은 사회의 지도적인 분으로 사회에 끼친 공로가 큰 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회단체가 연합해서 지내는 장례”인데, 규모가 클 때는 국민장과 유사하기도 하고 작을 때는 단체장과 유사하기도 하다(황기진, 『표준의례해설』, 문화당, 1962, 150-151쪽).

13) 김윤식(金允植, 1835~1922)의 장례는 원래 일본의 정치가 오쿠마 시게노부(大隈重信, 1838~1922)의 국민장을 염두에 둔 것인데, 식민지 상태에서 국민장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아 사회장이라는 용어를 고안했다고 한다(《동아일보》 1922.1.31.). 이에 대해 임경석은 “이 용어에는 식민지 조선인의 광범한 심리적 결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사람들의 열의와 창의성이 배어 있다.”라고 평가했다(『한국의 첫 사회장은 왜 실행되지 못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5, 2006, 154쪽).

으로 하는 이 두 형식만으로는 ‘제국 일본’이라는 국가권력에 희생된 수많은 죽음을 애도할 수 없었다. 게다가 첫 번째 사회장 시도가 큰 논란에 휩싸여 실행되지 못했으므로, 내부적으로 사회장을 거론하는 것도 쉽지만은 않았다. 그래서 주로 항일운동에 종사했던 인물의 ‘공적 애도’를 위해 먼저 단체장이 등장했는데, 이마저도 금지되는 상황이 거듭되면서 한 단계 더 굴절된 형태의 ‘집단적 인정투쟁’인 동지장이 등장하여 정착해간 것으로 보인다.¹⁴⁾ 따라서 형식상 공장의 위계를 따져보자면, ‘국장, 국민장, 사회장, 단체장, 동지장’ 순이라고 볼 수 있다.

공적 애도의 형식에서 단체장이나 동지장이라는 새로운 문화적 형태, 즉 ‘동지장 문화’가 출현한 것은 바로 ‘정상적인’ 정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닌, 인간이라는 사실 만으로 갖는 ‘권리(들)를 가질 권리’¹⁵⁾에 속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권리들을 가질 권리’는 “그

14) 동지장은 사회장이나 단체장보다 훨씬 더 소박하고 간소하다고 생각했다. 예컨대 1949년 6월 사망한 조완구(趙琬九)의 경우 “선생이 평생에 호화로운 것을 멀리하시고 항상 평민적인 생활을 하여 오셨으니 장사도 지극히 간소하게 이름은 동지장으로 하되”라고 했다(「同志葬을計劃, 趙琬九氏, 節次에言及」, 《조선일보》 1949.6.28.). 그해 7월 5일 치러진 김구(金九)의 장례도 “선생의 뜻을 받아” 처음에는 간소하게 동지장으로 치르려 했는데(「同志葬을計劃, 趙琬九氏, 節次에言及」, 《조선일보》 1949.6.28.), “정부의 결의가 전달되자” 경교장에서 협의 후 국민장으로 결정했다(「국무회의, 金九 장례식 절차-비용을 결정」, 《조선중앙일보》 1949.6.30.).

15) 이 말은 아렌트가 1949년 「인간의 권리들’, 그것은 무엇인가?」에서 처음 사용했다(스테파니 데구이어 외, 『권리를 가질 권리』, 위즈덤하우스, 2018, 12쪽). 아렌트는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정치 상황이 출현하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권리(그것은 어떤 사람이 그의 행위와 의견에 의해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조직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권리를 잃고 다시 얻을 수 없게 되면서, 우리는 비로소 그런 권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했다(한나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1, 533쪽).

것을 정당화해 줄 법과 규범이 확립되기 이전에 주장되는 권리”로서, 권리의 주체라는 지위는 인간의 본성에서 직접적으로 나온다고 본다. 그리고 이는 “정치체의 경계 너머로 쫓겨난 자들을 정치의 중심에 다시 불러”옴으로써 그 성원권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¹⁶⁾ 즉 이러한 원초적인 권리의 획득과 실현을 통해, 식민지 현실 속에서 조선인은 자유로운 인간으로서의 자기 정체성과 정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강화해갈 수 있었다. “슬픔은 복잡한 수준의 정치 공동체에 대한 느낌을 제공해준다. 무엇보다도, 근본적인 의존성과 윤리적 책임감을 이론화할 수 있도록 함의를 갖는 유대관계를 전면에 부각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했는데,¹⁷⁾ 이는 일제강점기 ‘동지장 문화’의 출현에서 쉽게 확인된다. 게다가 식민지 조선의 경찰은 일상적으로 ‘공적 애도’의 금지를 명령했기 때문에,¹⁸⁾ 남은 자들은 오히려 그리스 신화의 안티고네처럼 ‘죽은 생명’에게 애도의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과잉 폭력을 폭로해간 측면도 있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일제강점기에 ‘동지장 문화’가 출현하게 된 배경과 이것이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되어가는 과정과 양상, 그리고 그 성격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정리해보고자 한다. 언론에서 ‘동지장’이라는 말은 1927년 1월에 처음 등장했고 1987년에 1월에 마지막으로 확인된다.¹⁹⁾ 일제강점기와 ‘해방공간’에서는 주로

16) 스테파니 데구이어 외, 『권리를 가질 권리』, 116쪽 및 139-140쪽.

17) 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61쪽.

18) “상장례가 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도 진행되기 때문에, 공적인 영역의 가장 큰 힘을 소유한 국가는 상장례의 형성과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송현동, 「근대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198쪽).

19) 「元老가요작곡가 李鳳龍씨」, 《동아일보》 1987.1.10. 가수 이난영(李蘭影)의 오빠인 작곡가 이봉룡(李鳳龍, 72세)이 노환으로 별세하자 장례식

존경할 만한 독립운동가나 사회운동가의 죽음과 장례에서 확인되며, 1960~70년대에는 일반 사회 전역에서 종종 등장한다.²⁰⁾ 이렇게 60여 년 동안 존재한 ‘동지장’이란 표현과 그 문화적 형태에 주목한 기존 연구는 없다. 따라서 여기서는 ‘김윤식 사회장 사건’이나 독립운동가 인물 등에 관한 연구를 참고한다. 1차 자료는 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당대 신문 기사를 활용한다.

II. ‘동지장 문화’의 출현 배경

1. ‘공적 애도’ 금지에 대한 대응

일제강점기 언론에서 ‘동지장’이라는 용어가 처음 확인된 사례는 1927년 7월 11일 대동단(大同團) 단장 전협(全協, 1878~1927)의 죽음이다. ‘대동단 사건’으로 복역하던 그가 신병으로 가출옥한 지 이틀 만에 사망하자 동지들이 단체장이나 동지장을 모색하다가 당국의 금지로 “부득이 가족장(家族葬)으로 장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다.²¹⁾

을 ‘작가 동지장’으로 치렀다.

- 20) ‘광복회 동지장, 경찰 동지장, 소방 동지장, 교육자 동지장, 경제인 동지장, 영화인 동지장, 작가 동지장, 민주 동지장’ 등 각계각층의 장례에서 등장했다. 그러다가 1980년대 경부터 동지장이란 말은 자취를 감추고 소방장, 경찰장, 작가장, 민주장 등으로 칭해지기 시작했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동지’라는 단어의 의미가 왜곡되어 온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한편 이와 별도로 ‘유림장(儒林葬)’이라는 용어도 근대 이후 등장한 신조어인데, 오늘날에는 국어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으며 최근까지도 확인된다.
- 21) 「全協葬儀 리태원으로」, 《조선일보》 1927.7.14. 전협의 장례는 7월 14일 가족장으로 치러졌음에도 조객과 구경꾼 등 천여 명이 모여들었다고 한다(「警察部の默許를 警察署又禁止」, 《조선일보》 1927.7.14.).

일단 이 기사 내용에서 세 가지 점이 확인된다. 동지장이라는 말은 적어도 이보다 앞서 사용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점, 이전부터 사용되던 사회장이나 사회단체장 등과는 구분하여 사용했다는 점, 이 시기 일제 당국은 조선인의 ‘공적 애도’를 자주 금지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일제는 1920년 10월 조선총독부령으로 「형사자(刑死者)의 분묘·제사·초상 등의 취체에 관한 건」 제1~7조를 공포 시행하여 일체의 추모 행위를 법률로 금지했다. ‘형사자’란 사형집행자, 사형집행 전 사망자, 무기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중 사망자를 뜻한다.²²⁾ 그런데 이 법 제7조에서 “도지사는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유기의 징역 혹은 금고의 형에 처하여 집행 중 사망한 자,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관하여 수사, 기소 또는 구류 중 사망한 자, 또는 범죄 현장에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형사자와 같이 취급한다는 규정을 두어, 사실상 모든 경우에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1920년대 사회운동 진영에서 동지장을 사회단체(연합)장 즉 단체장과 구분하여 사용했음은 위 전협의 사례 외에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²³⁾ 대표적인 예로서 조선공산당, 조선노동총동맹, 신간회 등의 간부로 활동

22) 전병무, 「일제강점기 사형제도의 운영과 실태 : 사형 통계 자료와 사형집행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40, 2021, 173쪽.

23) 기존 연구에서도 “독립운동의 큰 별 송내호의 죽음”을 맞아 “장례를 社會團體聯合葬으로 치를 것을 결정”했지만, 日警의 압력으로 결국 新幹會同志葬으로 치렀다고 하여(孫炯富, 「殖民地時代 宋乃浩·琪浩 兄弟의 民族解放運動」, 『國史館論叢』 40, 1992, 97쪽), 단체장과 동지장을 구분했다. 하지만 송내호의 장례는 “소관 종로서로부터 상부의 명령이라 하며 시절이 시절인 동시에 형사피고인이므로 사회단체연합장지는 물론이요, 가족장이라도 공공연하게는 하지 못한다고 그 장의를 금지”했으므로(「宋乃浩氏 葬儀 鍾路署에서 禁止」, 《동아일보》 1928.12.22.) 사실은 동지장으로도 치르지 못했다.

하다가 검거된 후 형집행정지로 풀려나와 1931년 5월 19일 병원에서 사망한 이낙영(李樂永, 1897~1931)의 장례를 들 수 있다. “그의 동지들은 사회단체연합장으로 하려 하였으나 소관 본정서(本町署)의 금지로 못하게 되고, 동지장으로 하려던 것도 역시 금지를 당하였으므로 장의의 명목은 짓지 아니하고 여러 동지들이 운구하기로 하였다”고 한다.²⁴⁾ ‘조선학생전위동맹 사건’으로 검거되었다가 폐병으로 형집행정지 처분 중 1931년 10월 19일 사망한 정관진(丁寬鎭, 1902~1931) 장례의 경우, 사망 당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회원들이 유족에게 동지장을 권유하자 유족 측에서는 그냥 가족장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 다음날 중앙청년동맹의 이병극(李秉克)이 사회단체장으로 하겠다는 「집회계(集會屆)」를 종로서에 제출했다가 ‘형집행정지라는 현재 신분 관계’를 구실로 금지당했다.²⁵⁾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집 활동과 사회주의운동을 전개하다가 1932년 4월 15일 평양형무소에서 옥사(獄死)한 이병의(李丙儀, 1896~1932)의 경우도 “단체장과 동지장 등의 명의를 경찰에서 금지를 당하였으므로 개인과 개인끼리 동지장의 형식을” 밝기로 했다.²⁶⁾

일제강점기에는 대체로 항일운동단체에서 활동했던 인물의 삶을 위로하고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공적 애도’를 하고자 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단체장’을 원했다. 그런데 조선 내 사회운동과 대중투쟁이 활성화되는 1920년대 중반 이후 일제 당국이 이마저도 금지하거나, 허가하더라도 장례식 자체에 깊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단체’를 앞세우지 않는 형태의 ‘동지장’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전협 장례(1927.7.14.) 직전인 1920년대 중반 무렵의 단체장 추진 사례들을 살펴보면, 동지장이라는 새로운 모색이 필요했던 당시의 상

24) 「李樂永葬儀 同志가 運柩」, 《동아일보》 1931.5.21.

25) 京城鐘路警察署長, 「刑ノ執行停止處分者死亡ニ關スル件」, 1931.10.21. 『思想에 關한 情報 1』(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6) 「同志의 運柩로 李丙儀葬儀」, 《동아일보》 1932.4.22.

황을 이해할 수 있다.²⁷⁾

〈표 2〉 1920년대 중반(1925~1927.7.10) ‘단체장’ 추진 사례

	사망자 정보				장례 정보					
	망자	일시	활동	사망경위	일시	장의주체	최종형태	경과	당국 대응	장지, 기타
1	全一 ²⁸⁾ (함남 북청)	1925.7.30. (41세)	사회 운동	기근 구 제회원, 송파에 서 수해 민 구호 중 익사	1925 .8.2	4 단 체 합 동 회 (화 요 회, 북풍 회, 무산 자 동 맹 회, 조선 노동당)	4개 사 상 단 체 합 동 회 會葬	영결식: 4단체 합동회관 광 장, 500여 명 이 靈柩를 경 성역으로 운 구, 남대문(崇 禮門) 사이를 통과, 북청으 로 이송	당일 경찰이 弔旗 중 赤 色旗는 금지	조선기근 구제회에 서 葬費 300원 보 냄
2	金思國 (1895, 경성)	1926.5.8. (34세)	사회 운동	병사	1926 .5.12	장례 위 원 160 여명(정 우회, 전 진회 등 60여 단 체)	사 회 운 동 단 체 연합장	발인: 북악청 년회 영결식: 훈련 원 광장 弔歌(금지)→ 弔樂→장의참 가 단체 보고 (62개 단체) →영결사(금 지)→약력(일 부금지)→애 도사(검열)→ 弔狀錄→弔電 낭독(내용금 지)→弔歌(금 지)→冥想	정사복 경관 수십 명 엄중 경계, 모든 설비에 적색 사용 금지	水 鐵 里 공동묘지
3	林玟鎬 (1891, 전남 담양)	1926.5.27. (30세)	사회 운동	병사	1926 .5.30	전 남 해 방 운 동 자 동 맹, 전 남 청 년 연 맹	사 회 단 체 연 합 장	발인: 자택 영결식: 담양 청년회관	서울의 각 단 체도 당일 전 진회관에서 영결식 거행 하려 모였으	전남 담 양군 양면 城里

27) 당대 신문 기사를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출생연월일 등 일부는 공훈전자
자료관을 참조하였다. 사망 당시 연령은 출생연도와 맞지 않더라도 일단
신문 기사에 나오는 대로 기입했으며, 기사에 나오지 않는 경우 출생년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이하의 <표 2>와 <표 3>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했음
을 밝혀둔다.

						등 30여 단체			나 종로서에 금지당함	
4	金永祐 (1895, 경북 대구)	1926.7.16. (32세)	광복 단 사건	병사	1926 .7.21	장 의 위 원회(사 회단체)	사 회 운 동 단 체 연합장	발인: 자택 영결식: 德山 町 觀德堂	영결식 중 약 력 낭독 금지	부의 黃 靑洞 산
5	朴純秉 (1901, 함북 은성)	1926.8.25. (26세)	사 회 운동	검거 후 병사	1926 .8.28	각 단체 동지들, 유가족	가족장	사회단체연합 장 금지, 시신 을 함복 온성 으로 운구 (8.28), 개별 적으로 집합한 인원만 700명	종로서에서 사회단체연 합장 절대 금 지, 빈소 역 시 어느 단체 회관에서 두 지 못함, 告 別辭도 금지	
6	張玪鉉 (전남 함평)	1926.9.	사 회 운동		1926 .9.23	장 의 위 원회(사 회단체)	전 남 사 회 단 체 연합장	영 결 실: 咸平 청년회 광장, 조기 30여 개, 조문 및 조전 낭독 등		함평사회 단체연합 추 도 회 (11.5)
7	姜宅鎭 (1892, 경북 영주)	1926.10.2. (35세)	임시 정 부 , 사 회 운동	출 옥 (봄) 후 병사	1926 .11.4	정 우 회, 전 진 회 등 38개 단체, 장 의 원 원 孫 永 極 등	사 회 운 동 단 체 연합장	사회운동단체 연합장의위원 회 결정. 영결 식: 풍기소작 조합회관. 金 鷄洞 선영에서 단체연합장으 로 매장	* 2주기 추 도회 (1928.10) 는 경찰이 금 지	풍기에서 추 도 회 (1927.1. 26.), 경성 사 회단체연 합의 1주 기 추도 회
8	金永輝 (1888, 전북 전주)	1927.6.1 1. ²⁹⁾ (40세)	사 회 운동	출옥 (1 월) 후 익사 (한강)	1927 .6.13	유가족, 동지들	가족장	군산사회단체 연합장의소 조 직해 사회단체 연합장 모색, 가족장 결정. 아현리 화장장 거쳐 고향에 안장		군산 각 단체 추도 식(6.15)
9	李壽澤 (1891, 경북 칠곡)	1927.7.4. (38세)	광복 단 , 의열 단 , 밀양 폭탄 사건	고문 여 독 으 로 병사	1927 .7.10	유가족, 동지들	가족장	칠곡사회단체 연합장 준비, 경찰의 금지, 경북경찰부에 까지 수차 교 섭. 가족 친지 외에는 일체 참석하지 말도	왜 관 서 는 “본시 國法 을 범한 사람 이므로 경찰 은 절대 사회 단체연합장 의는 절대 금 지”. 부고 보	

전(弔電) 낭독 등이 모두 검열과 금지를 당했음을 알 수 있다.³²⁾ 또한 전일, 김사국 등의 장례를 보면 당시 일제 경찰은 사회주의운동이 활발해지던 상황에서 다수의 적색 조기(弔旗)가 등장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음도 알 수 있다.³³⁾ 위 이수택(李壽澤, 1891~1927)의 사례에서 보듯이,³⁴⁾ 남겨진 자들이 단체장으로 애도하려는 인물은 대부분 “국법(國法)을 범한 사람”으로서 ‘형집행정지’로 병보석된 자들이었으므로 금지의 명분을 붙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개개별의 금지 정도는 그때 그때 정세나 분위기, 지역 경찰의 특수한 상황 등에 좌우되었을 터이지만, 1920년대 중후반 조선 사회운동계의 일반적인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다. 송내호(宋乃浩, 1895~1928) 사례에서 보듯이,³⁵⁾ ‘상부의 명령 + 시절이 시절 + 형사피고인’ 등의 조건이 아우러져서 단체장이나 동지장은 물론 가족장도 ‘공공연하게는’ 치르지 못하도록 했다.

단체장을 허가받고도 장례식 자체에 대한 통제와 탄압이 계속되는 상황이 유가족이나 친지, 동지들에게 큰 모욕감과 상처를 주었음은 분명하다. 죽은 자의 대부분은 오랜 고문 취조와 감옥 생활이라는 고통을 겪었고, 이로 인해 생긴 병으로 사망했다. 당시 일제 당국은 경찰서나 형무소 내의 사망을 피하기 위해 죽음을 맞는 마지막 순간에 ‘형집행정지’, ‘병보석’, ‘가출옥’ 방식을 취하여 병원이나 자택으로 이송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다수가 출옥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독립운동 사건’, ‘사상 사건’ 관련자의 경우 사회적 여론을 의식하여 특히 더 경찰서나 형무소 내 사망을 피하고자 했다.³⁶⁾ 이처럼 단체장

32) 「六十團體聯合葬 故金思國氏 永訣式」, 『時代日報』 1926.5.13.

33) 전일 장례의 경우 50~60개의 조기를 준비했는데, 장례 당일 적색기를 금지하여 결국 1개밖에 들지 못했다(「全一氏葬儀 會葬者五百名」, 《조선일보》 1925.8.3.).

34) 「李壽澤氏 聯合葬儀 倭館警察 禁止, “국법에 범했다는 이유”, 경찰의 過酷은 如此」 《조선일보》 1927.7.10.

35) <각주 23> 참조.

이나 동지장이 준비될 만한 죽음은 대부분 ‘고문치사’ 내지 ‘순국’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³⁷⁾ 따라서 항일운동가의 죽음을 공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하려는 의지는 남겨진 자들에게는 인륜성에 기초한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이었다. 따라서 남겨진 자들은 죽은 자와 자신이 몸담은 단체를 배제한 ‘동지장’ 방식을 취해서라도 허가받으려고 애썼으나, 이 역시 같은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2. 사회장 등에 대한 비판 여론

3.1운동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도 사회적 공론의 장이 열리면서 ‘애도할 만한 죽음이 무엇인가’라는 ‘애도의 배분’³⁸⁾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는 사회장, 단체장, 동지장 등 모든 ‘공적 애도’의 바탕이 되는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이는 비록 공론화될 수는 없었

36) 참고로 신문 기사에서 보이는 ‘문화통치기’ ‘고문치사자’ 40명의 사망 장소를 보면, ‘경찰서 내 26, 방면 후 자택 9, 인치 도중 3, 병원 이송 2’로 나타난다. 이 40명에는 항일·저항(15명)보다는 절도죄나 법규 위반 등(23명)이 더 많았다(변은진,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29쪽).

37) 오늘날 독립유공자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순국’한 인물이 무수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변은진,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희병 사건’」(『역사연구』 40, 2023), I 장 2절 참조.

38) 버틀러는 “어떤 주체는 애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다른 주체들은 애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결정하는 애도 가능성의 차등적 배분은, 누가 규범에 맞는 인간인가에 대해 특정한 배타적 관념을 생산하고 유지하는 작용을 한다. 살아갈 수 있는 삶, 애도할 수 있는 죽음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애도의 배분’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신문의 부고 여부 등을 거론하면서 슬픔에도 ‘위계질서’가 있음을 지적하고, “부고가 있으려면 삶, 즉 언급할 가치가 있는 삶, 소중히 여기고 보존할 가치가 있는 삶, 인정받을 자격이 있는 삶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주디스 버틀러, 『위태로운 삶』, 13쪽 및 66쪽).

어도 일제 무단통치기에도 존재했을 것이다. 애도의 배분을 가름하는 기준은 항일의 정도나 민족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도 중요했지만, 그에 앞서 죽은 자의 성품과 인간성, 도덕성 등이 주되게 작동했다.³⁹⁾ 이는 3.1운동이 진행 중이던 1919년에 일어난 두 건의 ‘고문치사 사건’에 대해 남겨진 자들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첫 번째는 1919년 5월 일제 당국이 3.1운동을 “은밀히 선동”한 불령선인(不逞鮮人)이라 칭했음에도 평소 성행이 무뢰한이라고 지탄받던 명윤원(明潤源, 충남 서산, 38세, 무직)의 고문치사 사건인데, 당국의 정당방위라는 주장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장례식도 유족들만 쓸쓸히 치렀다. 두 번째는 1919년 12월 충북 괴산군 목도면사무소(牧渡面事務所)에서 하인으로 일하던 자가 자신의 부당해고에 맞서다가 고문치사를 당한 사건인데, 마을 사람들이 주재소까지 습격하여 밤새 점거 농성을 벌일 정도로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다.⁴⁰⁾ 이처럼 애도할 만한 죽음인지 아닌지는 일차적으로 죽은 자의 삶이 도덕적이었는지 여부,

39) 이는 「윤치호 일기」에서도 확인되는데, 공직에도 있지 않았던 1927년 이상재의 장례가 1926년 이완용의 장례보다 ‘민중들로부터 깊은 애도를 받았음’을 기록하고 있다(Juljan BIONTINO, 「윤치호의 ‘죽음’과 장례문화 인식 - 『윤치호 일기』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66, 2015, 207쪽).

40) 자세한 내용은 변은진,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14-15쪽 참조. 두 번째 고문치사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지만, 아마도 면사무소의 말단 하인으로 일하면서 면민들과 신뢰 관계를 쌓았을 것이다. 첫 번째 고문치사자의 경우, “그의 사망에 대해 관헌 및 內地人은 추호도 동정하지 않으며 중위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며, 오히려 그 죽음을 기뻐하고 있다. 조선인 측에서도 평소 그를 뱀이나 전갈 보듯이 끔찍이 싫어했고, 그의 죽음을 매우 기뻐하여 동정하는 자가 없어 因果應報이자 천벌이라고 평한다. 장례식장에도 모인 자가 전혀 없고 유족뿐이다.”라고 보고했다[宇都宮太郎(朝鮮駐劄軍司令官), 「不逞鮮人 傷害致死의 件 報告」, 1919.5.3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1)』(한국사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남겨진 자와의 상호 유대관계에 달려 있었다.

이와 더불어 또 다른 주요 요소는 민족적·사회적 기여도 문제였다. 이는 최초의 사회장 시도였던 ‘김윤식 사회장 사건’에서 잘 드러난다. 1922년 1월 21일 87세로 사망한 운양(雲養) 김윤식의 장례가 동아일보사 등을 중심으로 사회장을 치르기로 결정되자, 그의 과거 행적을 들어 대대적인 ‘사회장 반대운동’이 일어났다. 경학원(經學院) 대제학 김윤식은 3.1운동 당시 내각총리대신 앞으로 「조선독립청원서」를 제출한 일로 자작(子爵)의 작위까지 박탈당하고 경학원에서 면직되었으며, 조선총독의 자문기구인 중추원의 부의장직을 거절했던 인물이다. 하지만 일제로부터 자작의 작위와 ‘은사금(恩賜金)’을 받아 이른바 ‘조선귀족’으로 생활했고 총독부 고관들과도 동료처럼 지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로부터 “영위영작(榮位榮爵)을 얻기 위해서 이리 붙고 저리 붙는 자”라는 욕설을 듣곤 했다. 이렇게 그의 행적에 오점이 있어서 사회장은 불가하다는 지적은 일반 사회에도 호응을 얻어 폭발적인 사회장 반대운동이 일어났고, 결국 유족 측이 “세상에 미안한 일이 있는 까닭에 사회장을 사절”한다는 취지의 거절 통지를 보내어 사회장은 무산되었다.⁴¹⁾

당시 김윤식의 사회장을 비판했던 김명식(金明植)은 공장(公葬)의 경우 “그 공(公)하고 아니함을 논”해야 하는데, 민중의 반대로 사회장

41) 임경석, 「한국의 첫 사회장은 왜 실행되지 못했는가」, 151-159쪽 참조. 김윤식의 장례는 2월 4일에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 사건의 이면에는 당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등 정치세력들의 역학관계가 있었다는 역사학계의 연구, 이 사건이 ‘사회’와 ‘여론’ 등의 개념과 의미를 재정의했다는 국문학계의 연구 등이 있다(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2000; 임경석, 「운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 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2005; 김현주, 「김윤식 사회장 사건의 정치문화적 의미」, 『東方學志』 132, 2005;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해안, 2023).

을 행하지 못한 것은 사필귀정이며 “실로 민중운동의 성공”이라면서 다음과 같이 비난의 논조를 펼쳤다.⁴²⁾

김 씨는 조선사회의 사람이 아니오, 조선 국가의 사람이며, 이조 황실의 사람이라. 국가와 황실에 대하여 어떠한 공훈이 있는지 이는 알지 못하되, 만일 공훈 있다 하면 국가와 황실에 있을지라. 그러므로 씨를 공장한다 하면 국장이나 황실장을 하는 것이 옳고, 사회장을 행하는 것은 심히 옳지 않다. …… 사회에 있는 인생은 모두 사회에 대하여 공헌하나니 …… 사회장을 사회에서 행한다 하면 사회인을 모두 사회장하는 것이 옳다.

사회장에 대한 비판 여론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신간회 초대회장을 지낸 월남(月南) 이상재(李商在, 1850~1927)의 사회장에 대해서도 비판 여론은 있었다. 김윤식 사건 이후 사실상 최초의 사회장으로 치러진 이상재의 장례는 72개 사회단체 대표들이 주관하였으며, 장례행렬이 종로에서 남대문까지 뻗친 전례 없는 성대한 예식이었다.⁴³⁾ 이에 대해 한 소설에서는 “아까운 돈을 써어버릴 송장에게 찌르려 하지 말고, 허다한 살아야 할 송장들에게 뿌려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지내게 내버려 두어. 산 자에겐 더 중하고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허영과 망동, 위만(僞瞞)의 열성과 가장(假裝)의 여론”이라고 비판적으로 묘사했다.⁴⁴⁾ 1935년 12월 13일 저녁 삼천리사 주최로 명월관에서 개최된 간담회에서는 ‘사회장을 하여

42) 金明植, 「社會葬은 何?」, 『新生活』 1, 1922.3.1., 50-53쪽.

43) 김윤희, 「근현대 상례제도와 상례복식의 문화변동 연구」, 138쪽.

44) 유인탁의 「層下人의 感傷」(京都朝鮮留學生會, 『學潮』 2, 1927.6)이라는 소설의 구절인데, 이는 이상재의 사회장 행렬을 본 술집 취객의 입을 통해 내뱉은 말이다(정중현, 「京都의 조선유학생 잡지 연구 - 『學友』, 『學潮』, 『京都帝國大學朝鮮人(留)學生同窓會報』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59, 2013, 498쪽에서 재인용).

줄 (만한) 인물’을 주제로 아래와 같이 논의하고 있다.⁴⁵⁾

- 김동환(金東煥, 『삼천리』 주간) : “이상재 모양으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장하여 줄 만한 인물이 누구누구일까요.”

- 송봉우(宋奉瑀, 『비판』 주간) : “사회장이라 하면 사회 민중의 충의를 묶어 삼가 애도한다는 것인데, 과거나 오늘날까지 지내 온 경로를 바라보면 사회장하여 줄 만한 인물이 전혀 없다고 보네. 한 사람도 없네. 사회장 받겠거든 그 가진 돈과 정성을 더욱더욱 빛 있게 쓰고서 누구나 그 사람이면 무조건하고 상여 뒤에 서줄 만한 인물이 된 뒤에야 사회장 문제를 비로소 꺼내야 옳을 것 아닌가. 그런데 오늘날까지의 현재로 보아야 그런 인물이 어디 눈에 띄나.”

- 이서구(李瑞求, 전 신문사 사회부장) : “나도 반대네. 앞으로는 사회장이란 것은 전연 폐지할 바야. 나는 단연 반대이네. 하려거든 학교장(學校長)이면 학교장(學校葬)으로, 신문사장(新聞社長)이면 신문사장(新聞社葬)으로 하는 등 무슨 무슨 단체장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줄 아네만, 전 사회 각층을 망라한 것이란 있을 수 없는 것이네.”

- 차상찬(車相瓚, 『개벽』 주간) : “나도 그 말에 찬성이네.”

- 유광렬(柳光烈, 신문사 편집국장) : “나도 동일한 의견이네.”

위 내용을 통해 사회장을 둘러싼 논쟁은 1930년대에도 계속되었으며 대부분 부정적 입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장을 하여 줄 만한 인물’이라는 논제 자체에서부터 ‘애도의 배분’을 문제시했음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돈과 정성’ 등 실질적이면서도 도덕적인 사회적 기여도를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사회 구성원 모두의 애도 의지와 동의가 필요한 사회장이 아니라 단체장으로 애도함이 옳다고 보고 있다.⁴⁶⁾

45) 「天下大小人物評論會」, 『三千里』 제8권 제1호, 1936.1, 40쪽.

46) 사회장이 아니라 단체장이 옳다는 주장은 해방 후에도 계속되었다. 예컨대 미국에서 사망한 정치인 최순주(崔淳周, 1904~1956)의 장례를 사회장

‘김윤식 사회장 사건’에서 촉발된 사회장 찬반 논의와 비판 여론은 사상이나 계파의 이합집산이라는 직접적인 문제를 넘어서 일정하게 식민지 조선 사회의 건강성을 보여준 면이 있다. 단체장과 동지장의 출현에는 일제 당국의 지속적인 ‘공적 애도’ 금지라는 객관적인 상황이 존재했지만, 그 이면에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인간으로서 개인과 공동체에 대한 자기 판단의 의지와 힘이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장례비용 등의 공적 마련

항일운동을 전개하다가 일제 경찰에 붙잡혀서 모진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서 불치의 병을 얻어 사망한 자들의 장례를 단체장이나 동지장으로 치러서 공적으로 애도하고 추모해야 한다는 것은 남겨진 모두에게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단체장이나 동지장을 치르는 직접적인 배경에는 ‘장례 비용의 공적 마련’이라는 절박한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다. 순국한 항일운동가들의 절대다수는 오랫동안 생업이나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처지에 있었으며, 본인의 재산도 사회운동에 쏟아붓는 경우가 많았다.⁴⁷⁾ 그래서 고문치사를 당하거나 옥중순국과 다름없는 일을 겪어도 곧바로

으로 치른다고 결정하자, 신문 사설에서는 “자유당장(自由黨葬)이나 애련장(愛聯葬)으로 하여 동지들의 손으로 따듯이 장송되는 것이 훨씬 고인의 뜻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社會葬이라야만 될 것인가」, 《조선일보》 1956.6.20.).

- 47) 예컨대 1927년 12월 ‘철원의 중진’ 이용순(李龍洵)의 사망과 장례에 대해 “씨가 사회를 위하여 몸으로 또는 금전을 희생하면서 노력한 공로가 적지 않으므로”(「鐵原의 重鎮 李龍洵氏 別世」, 《조선일보》 1927.12.15.), 1931년 1월 신간회 동래지회 집행위원장 윤병항(尹炳恒)은 “자기 전재산을 바쳐가면서 악전분투하여 온 동래 사회의 큰 공로자”라(「尹炳恒氏 別世, 社會團聯合葬」, 《동아일보》 1931.1.17.) 하여 사회단체연합장을 하기로 했다고 한다.

신병조차 인수하기 어려운 극빈한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당시 일제 당국이 경찰서나 형무소 내에서 사망하는 것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에 병원이나 자택으로 이송하려 했다는 점은 앞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단지 당국의 입장만은 아니었다. 그 시절까지만 해도 자택이 아닌 병원 등 다른 곳에서 사망하는 것은 모두 객사(客死)라고 생각하여, 평생을 밖에서 활동한 가족을 집으로 모셔 와서 따뜻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게 하는 것이 남겨진 자의 ‘도리’라는 인식이 있었다. 자택으로의 이송이 도저히 어려운 경우에는 그와 관련이 있던 단체에라도 이송하려 했다.⁴⁸⁾ 그러니 하물며 차디찬 감옥에서 사망할 경우 이를 대하는 가족과 동지들의 심정과 울분은 극에 달하였다.

이러한 분위기는 앞서 최초의 동지장 모색 사례로 살펴본 전협 의 장례에서부터 확인된다. 전협은 병으로 가출옥된 직후 병원으로 옮겼으나 생명이 위독해져서 유일한 유족인 부인 변화(卞和)가 집을 하나 빌려서 운명하게 하려 했으나, 이조차 여의치 않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결국 창성동(昌成洞) 전씨종약소로 옮겨졌고 이후 바로 사망하였다. 부인은 남편이 감옥에 있던 9년 동안의 품삯을 모은 30원을 모두 치료비에 소비해 버려서 단돈 10원이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 당시 언론에서는 “그의 오십 평생은 순전히 조선○○운동에 바치었다”라고 하면서, “장비(葬費)의 관출이 망연하여 그의 동지들이 단체장과 동지장을 도모”했다고 기사화했다.⁴⁹⁾ 이러한 기사를 본 황해도 서흥읍(瑞興邑)의 한 독지가는 안수만(眼水滿)이라는 익명으로 3원을 기부하기도 했다.⁵⁰⁾

48) 예컨대 전협은 창성동 전씨종약소로, 차금봉(車今奉)은 가회동 대동학교(大東學校)로 이송되었다.

49) 「大同團長全協 多恨한此世와永訣」, 《동아일보》 1927.7.12.; 「全協葬儀 리태원으로」, 《조선일보》 1927.7.14.

앞서 살펴본 이낙영 장례의 경우에도 “장비 기타 준비에 관하여는 여러 동지들이 근근이 주선하였고, 그의 가족들도 방금 구명할 도리조차 막연한 형편이라고 하여 그의 일반 동지들은 자못 우려하는 중”이었다고 한다.⁵¹⁾ 동지장과 단체장을 모색하다가 모두 금지당해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른 정관진 장례의 경우도 ‘장의비 출자’는 유족과 친족의 재정이 여의치 않았다고 한다. 이에 영구 자동차 및 유족·친족 등의 회장(會葬) 자동차 2대의 대여 비용과 잡비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비판사의 송봉우(宋奉瑀), 전 신간회 간부 정희찬(鄭喜燦), 제3선사의 김철묵(金澈默)이 각기 자동차 1대 대여의 비용을 지출했다고 경찰이 보고하였다.⁵²⁾

이렇게 힘겨운 일생을 살다 간 동지의 죽음을 맞아 십시일반으로 장례비용을 마련하여 애도하려는 모습에 대해 일반 사회에서는 ‘미거(美舉)’라며 칭찬하는 분위기였다. 한 예로 1928년 2월 사망한 경북 김천의 신갑선(申甲先) 장례에 대한 신문 보도를 살펴보자.⁵³⁾

근친지구(近親知舊)도 없이 가난한 집에 출생하여 일생을 한 번도 즐겁게 지내지 못하고 남의 집 고용살이로 한 많은 세상을 보내면서 항상 사회의 불공평을 저주하고 그날그날을 지내오다가, 작년 가을에 금릉농우동맹(金陵農友同盟)이 창립되자 곧 회원으로서 누구보다도 가장 선두에서 여러 가지 일신의 괴로움을 무릅쓰고 맹렬히 활동하여 오던 신갑선 군이 금년 정초부터 병을 얻어 드디어 한 많은 세상과 맹세한 여러 동무를 뒤로하고 죽고 말았으므로 금릉농우동맹에서는 오랫동안

50) 「吊旗輓章과 永訣式도 禁止」, 《동아일보》 1927.7.14. 안수만은 “눈물이 눈에 가득 찼다는 의미인 듯”하다고 적고 있다.

51) 「李樂永 葬儀, 同志가 運柩」, 《동아일보》 1931.5.21.

52) 京城鐘路警察署長, 「刑ノ執行停止處分者死亡ニ關スル件」, 1931.10.21. 『思想에 關한 情報 1』.

53) 「無依한 同志에 團體葬, 김천농우동맹서」, 《조선일보》 1928.2.14.

동안 병을 구호하여 오다가 임종 때는 간부 일동이 철야하였으며, 고인의 공적과 그의 생애를 추억하는 동시에 회원 백여 명이 회합하여 성대한 단체장을 행하였다는데, 일반은 고인의 행적과 농우동맹의 미거를 칭송한다더라.

이 외에도 작업 도중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조합에서 성대하게 동지장을 치러주고 2년간 유가족의 생활비까지 보장하기로 한 사례가 있다. 함북 웅기의 학산조(鶴山組) 조합원 김순옥(金順旭, 43세)이 1931년 3월 10일 부두 축항선에서 작업하다가 백양환목(白楊丸木)에 치여 중상을 당해 공의(公醫)에게 수술받다가 사흘 만에 사망했다. 학산조에서는 성대한 동지장을 거행하고 유가족 5명에게 생활비로 2년간 매월 12원씩 보장해주기로 했다. 이에 언론에서는 ‘열혈 섞인 학산조의 미거’라며 칭찬했다.⁵⁴⁾ 이 경우 일제 당국도 동지장을 허가하고 장례비용이나 유족의 생활 보장 등에 대해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다시피 대부분의 단체장이나 동지장 시도는 당국의 금지로 점철되었고, 이 탄압의 대상에는 장례비 마련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위 정관진 사례처럼 가족장으로 치르더라도 주변 동지의 경비 지원을 허락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예를 들어 1927년 7월 경북 칠곡의 이수택 장례에 대해 왜관서에서는 “부근 촌락과 일가친척 외에 다른 사람은 절대로 장지에 참례치 못하게 하되, 만일 불응하면 장의의 집합을 금지하고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은 검속한다”라고 했다. 장례비용에 쓰려고 청년회관을 대동하고 부의금을 미리 수합해 뒀는데, 주재소 형사가 청년회원을 대동하고 부의금을 낸 사람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환부하라고 압박을 가하기까지 했다.⁵⁵⁾ 조선공산당

54) 「慘死組合員 同志葬, 遺族五人의 生活保障, 熱血석진 鶴山組 美舉」, 《동아일보》 1931.3.17.

간부였던 고광수(高光洙, 1900~1930)의 장례 역시 동지장을 금지하는 동시에 장례에는 가족 외에 단 1명도 수행하지 못하게 했다.⁵⁶⁾ 이처럼 공적 애도를 금지한 경우 일제 경찰은 대체로 가족과 친척 외에는 조문객 자체를 일절 받을 수 없도록 금지하기도 했는데, 이 경우 장례비용 마련이라는 현실적 요구는 더욱 절박한 문제로 남았다.

Ⅲ. ‘동지장 문화’의 현황과 성격

1. ‘동지장 문화’의 현황

일제강점기 언론에서 ‘동지장’을 추진한 사례는 모두 24건 정도가 확인된다. 이 가운데 실제로 동지장을 치른 사례는 18건이며,⁵⁷⁾ 6건은 동지장을 시도했으나 금지당한 사례이다. 금지당한 비율은 25%로서 앞서 살펴본 1925~27년 시기 단체장 금지 사례 33%에 비하면 약간 낮아지기는 했으나, 큰 차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단체장에 대한 당국의 불허와 금지 조치를 피하려는 의지에서 또 다른 공적 애도 형태로 동지장이 출현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크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고도 할 수 있다. 먼저 24건의 동지장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5) 「“社會團體葬은 勿論禁止, 吊喪도 絕對不許, 조문과 조전이 올지 모르니 못오도록 편지를 하라”고 李壽澤氏社會團體葬에 對한 言語道斷의 倭館警察高壓, 喪家를 경계, 여차직하면 검속을 한다, “贈儀金도 還付하라”, 『中外日報』 1927.7.10.

56) 「同志葬은 不許 高광수의 장의」, 『中外日報』 1930.2.8.

57) 언론 등에서 특별히 ‘금지’ 보도가 있지 않은 경우, 동지장을 치른 것으로 보았다.

〈표 3〉 일제강점기 동지장 추진 사례(1927~1936)

	사망자 정보				장례 정보					
	성명	일시	소속 활동	사망경위	일시	장의주체	형태	경과	당국 대응	장지, 기타
1	全協 (1878, 경성)	1927.7.11. (50세)	大同團 단장	신 병 으 로 가 출 옥 (7.9) 직 후 사망	1927.7.14. (경성)	유가족	가족장	단체장 또는 동지장 모색, 발인(全氏宗約所), 당일 천여 명 운집	모든 의식 불허, 조속한 장례 독촉, 영결식 및 弔 旌나 輓章 금지	이 태 원 공동묘지 / 기부로 葬費 마련
2	李鉦 (1895, 경북 안동)	1928.12.25 (34세)	동경조선노동동맹회 간부, 신간회 총무간사	위 장 병 으 로 사망	1928.12.29. (경성)	장의위원장(權東鎭), 의식부·제무부·서무부 등	동지장	護葬所(신간회본부), 영결식(천도교당), 開式奏樂→式辭→약력→遺稿낭독→애도사→弔文·弔電→弔辭→일동 묵념 순	안동에서 權重烈 등 발기로 추도회 (1929.1.10.) 하려다가 금지(개별 추도만 허락)	신 당 리 화장장
3	李正洙 (1893, 함북 길주)	1929.2.16. (37세)	한인사회당, 조선노동당, 신간회	병사	1929.2.20. (경성)	장의위원장(金商震), 의식부·제정부·서무부	동지장	발인(자택), 영결식(천도교기념관)		水 鐵 里 공동묘지
4	車今奉 (1898, 경성)	1929.3.11. (32세)	노동운동,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서 대 문 형 무소 옥사	1929.3.14. (경성)	대표위원 徐 廷 禧 등	동지장	발인(자택), 영결식(삿갓시장광장), 300여 명 행렬	굴레방다리에서 서대문서 해산명령, 搖鈴과 만장 등 압수, 서정희 등 인치	공 덕 리 공동묘지
5	高光洙 (1903, 강원 횡성)	1930.2.5. (27세)	조선공산당, 고려공청, 간도공산당	병 보 석 (1.31) 직 후 大東學校서 사망	1930.2.7. (경성)	유가족	가족장	동지장 결정했으나 불허, 유해만 서대문 밖 화장터로 이구	종로서 금지, 가족 외 1명도 수행 못하게 함	예심 중 사망으로 검사공소 소멸
6	蔡그리 고리 (러시아 출생)	1930.4.19. (40세)	연해주당 고령부 비서, 정치학교 교수	만 기 출 옥 (3.29) 후 폐 병 으 로 입원 치료 중 사망	1930.4.23. (경성)	장의위원장(徐廷禧) 외 서무부·제정부·장의부 위원	동지장	호상소(신간회본부), 300여 명 영결식(천도교기념관), 위원장 弔辭, 弔文·弔電 낭독, 약력소개, 弔樂, 默想 진행. 경호는 弘濟少年軍·新明少年軍 담당	영결식에서 약력 소개 도중 한때 임석경관의 중지	세브란스 시신 기증, 해부, 영구 보존. 1주기에 安骨式(鐵棺) 겸 추도식

7	韓永燮 (제주)	1931.1.15. (22세)	일본 도쿄에서 공산주의 운동	도쿄에서 사망, 제주로 이송 (1.19)	1931.1.22. (제주)	장의위원회	동지장	동지장 결정. ‘追悼赤革 한영섭의 靈’ 등을 쓴 弔旗 58개 제작. 장례식(조부집). 매장 당시 혁명가 합창, ‘한영섭 만세’ 삼창 등	장례식 불온행동과 만장 등의 불온문구로 金斗性 등 다수 체포 (3.31, 赤碑 사건), 石碑와 묘지비패 철거, ‘한영섭 묘 발굴령’을 내려 관까지 파헤칠(5.6). 6명 징역형, 金才童 옥사	제주 대공동묘지. 동지각출로 마을 우물가에 石碑 건립 (3.17)
8	金順旭 (함남영흥)	1931.3.13. (43세)	함북 옹기 鶴山組員	축항선 작업 중 중상, 수술직후 사망	1931.3 (옹기)	鶴山組	동지장 (조합원)	* 사망한 3월 당시 노동쟁의 중이었음		2년간 유가족 생활 보장 (매월 12원) 약속
9	朱昌燁 (평북의주)	1931.3.20. (29세)	신의주청년동맹 사건	3년 만에 무죄방면 (3.20), 청맹대회 중 경관의 발언 중지 에 각혈하며 절명	1931.3.22. (신의주)	동지들	동지장 (同盟葬)	동지장(신의주청년동맹장) 거행. 자택 발인, 若竹町 砂場 (전 공동묘지 광장)에서 300여 명 영결식, 金免洙(신간지회장) 式辭, 동지 弔辭 등	현장의 신의주경찰서원이 弔辭가 불온하다며 5인 연행, 24일 석방	신의주공동묘지매장
10	姜 虞 (姜 尙, 湖石, 1862, 충남부여)	1931.3.30. (70세)	공업전습소설치, 대종교 지도자, 1922년 12월 검거	풍병으로 자택 사망	1931.4.4. (부여)	장의위원회 (각지청년회 등)	동지연합장	沈相直, 朴祥煥(강경청년회), 張秀千·張昌善(鴻山青年會) 등 등 천여 조객 운집. 영결식, 동구 밖에서 2차 사진 촬영, 장지까지 장사진	부여서에서 7~8인 정사복 경관 대 출동, 4시경 무사히 마침. 6시경 청년 2명 (당질 姜日, 柳基燮) 검거	場 岩 面 北 阜 里 . 검거된 2인은 ‘충남비밀결사 사건’으로 기소
11	李樂永 (1897, 함남북청)	1931.5.19. (34세)	조선공산당, 조선노동총동맹, 신간회 간부	위독하여 형집행정지(5.7) 후 병원에서 사망	1931.5.21. (경성)	유가족, 동지들	가족장	단체장 결정하고 안되면 동지장 하기로 함. 둘 다 금지되어 협회의원에서 간단한 목상 후 영결식. 동지들이 운구	단체장과 동지장 모두 금지	弘濟院 경성화장장. 葬費는 동지들이 주선

118 역사와 담론 제109집

12	丁寬鎭 (1902, 황해 연백) ⁵⁸⁾	1931.10.19 (30세)	조선학생혁명당, 조선학생전위동맹 사건	폐병으로 형집행정지 처분 중 사망	1931.10.22. (경성)	유가족, 동지들	가족장	동지장(학생과학연구회)과 사회단체연합장(중앙청년동맹) 논의. 가족과 鄭雲永 金蘭斌 등 20여 명 동지 참석	사회단체장 위해 종로서에 집회개제출(10.21), 형집행정지자를 이유로 금지. 종로서 계속 사찰	홍제원 화장장. 유가족과 동지 가 葬費 조달
13	金長星 (1913, 경기 수원)	1932.3.9. (19세)	수원소년동맹, 수원출판노동조합, 수원격문사건	김천소년형무소 복역 중 가출옥, 치료중 사망	1932.3.(수원)	장의위원회	동지장	동지장으로 무사히 안장		수원읍 공동묘지
14	李丙儀 (1896, 경기 파주)	1932.4.15 (36세)	임시정부 자금모집, 애국단 사건, 서울청년회, 조선공산당	평양형무소 옥사	1932.4.21. (경성)	유가족, 동지들	가족장(개인)과 개인끼리 동지장 형식)	조선노총이 장례 준비. 장의사무소(송현동). 경봉열차로 유해 이동(4.20), 批判社 안치. 영결식(수철리 공동묘지)	단체장과 동지장 등의 명의를 경찰이 금지	水鐵里 공동묘지
15	玄鼎健 (1887, ⁵⁹⁾ 경북 대구)	1932.12.30 (45세)	임시의정원 경상도의원,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측 성회	만기출옥(1932.6) 후 수술, 치료 중 사망	1933.1.3.(경성)	장의위원회	동지장	장의위원: 鄭雲永 鄭喜燦 金若水 俞鎭熙 鄭栢 李甲基 朴日馨 洪承裕 徐昌, 영결식(가회동 자택)		미아리 공동묘지. 40여 일 후 부인尹德卿(39) 자살
16	朴輝秉 (1905, 함남 덕원)	1933.3.13. (25세)	덕원, 원산 동지 청년운동과 농민운동, 고려공청	덕원 농조 사건으로 예비검속, 취조 중 고문치사	1933.3.17. (덕원)	장례위원장 康基德, 장례위원 宋秉植 姜周鎭 朴聖秉 등	동지장	장의위원 석방 후인 17일 자택 발인, 300여 명 참가하여 장례식(開式→默想→式辭→弔文→哀辭→約력→焚香→永訣歌 순)	원산서에서 장의위원 강기덕 등 검속(3.15). 장례식 당일 ‘박희병 家 부근 일시 통행금지’ 내걸고 통제. 장지까지 길가 엄중 경계	大谷山. 고문경관고소(승소). 조선총독상대 위자료 청구소송(패소)
17	金台熙 (金泰熙, 1899, 경성)	1933.4.5. ⁶⁰⁾ (34세)	밀양폭탄사건, 조선공산당 사건	만기출옥(3.2) 후 옥중 중병으로 사망	1933.4.8(경성)	장의위원장 鄭雲永 鄭熙燦 金若水 俞鎭熙 鄭熙載 등	동지장	咸雲永 金若水 俞鎭熙 車載貞 愼甲範 등 동지 제씨 추진		

18	韓鳳三 (1908, 경남 밀양)	1933.8.6. (25세)	밀양합동노동조합, 밀양적색노동조합, 반전격문사건	병보석(6.13) 후 자택 요양 중 사망	1933.8.8.(밀양)	유가족	가족장	동지장의위원회(朴庚守 李在鳳 朴在希 趙鐸福 朴炳卓 등) 조직. 부고장 인쇄 등 준비. 검속으로 추진 못함	밀양서에서 갑자기 급지. 장의위원 등 6명 일시 검속(8.7). 부고장과 포스터 압수	밀양화장장. 동지장 ‘거행하였다’는 기사 정보도 (조선일보, 8.19)
19	全昌涉 (평남 평원)	1933.10.14 (29세)	漢川自由勞組, 중국인 폭동사건 주모자로 복역(1931)	평양형무소 병보석(10.3) 후 자택 치료 중 사망	1933.10.17. (평원)	동지들	동지장	“각지에 산재해 있던 동지들이 모여들어 동지장으로 장의가 거행”		
20	全濤 (전남 광주)	1934.4.22. (44세)	조선공산당, 고려공산동맹 전남도책	만기출옥(1933.8) 후 자택 치료 중 사망	1934.4.24. (목포)	장의위원장 徐炳寅, 위원 曹克煥 등	동지장	영결식		목포부산정리 공동묘지
21	陳秉基 (1896, 경북 칠곡)	1935.1.15. (40세)	평양 사회운동, 조선공산당, 고려공청, 조공재건운동	출옥 후 1934년부터 자택 요양 중 사망	1935.1.19. (칠곡)	장의위원회	동지장	인근 각지의 友人 다수 참여, “근래 보지 못한 盛儀”를 이룸		칠곡군石積面浦南洞池谷山
22	鄭守基 (1896, 경북 월성)	1936.2.2 (41세)	북경 동지 활동, 군사금모집, 경북 유립단 사건	고문으로 불구가 되어 출옥, 요양 중 사망	1936.2.4. (대구)	준비위원 鄭雲海 魯鄭李 鳳魯張 河鳴 등	동지장(友人葬)	유족이 없어 友人葬 결의하고 준비위원 선기. 영결식(嶠南學校 앞)	장례 직후 ‘동지장 문제’로 대구서에서 鄭雲海 徐五龍 李三文 李仁秀 등 검거	
23	李奎運 (함남 안변)	1936.5.10. (32세)	상해한인청년동맹 사건, 안변적농 책임, 통천적농 사건	3년간 미결 상태에서 병보석(4.2), 원산구세병원 사망	1936.5.14. (안변)	동지들	동지장	자택에서 동지장으로 하기로 함		
24	張純	1936.5.	경성노동회 위원	숙환으로 사망	1936.5.26. (경성)	장의위원회	동지장	동지장(會員葬)으로 장의 집행. 노동회원 200여 명 참가		

위 24건의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27년과 1928년 각 1건, 1929년과 1930년 각 2건, 1931년 6건, 1932년 3건, 1933년 4건, 1934년과 1935년 각 1건, 1936년이 3건으로 나타난다. 신문에 보도된 몇 건의 사례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1930년대로 들어서면서 동지장으로 장례를 치르려는 예가 점차 늘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단체장 추진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확실히 드러난다. 참고로 앞서 <표 1>을 통해 살펴본 1925~1927년 7월까지 사례 이후의 단체장 추진 사례 20건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⁶¹⁾

<표 4> 1927년 8월 이후 단체장 추진 사례

	추진 시기	사망자	지역	활동 분야	추진 내용	당국 대응
1	1927년 9~10월	姜敬玉 (여, 72세)	경 북 안동	농민운동	안동군 각 단체연합 장, 수천 명 회집	조기 압수, 영결식 장 소(시장) 금지, 喪旗 통행금지 등
2	1927년 12월	金孝宗 (28세)	황 해 재령	3.1 운동, 사회운동	재령 최초의 사회단 체연합장 추진	
3	1927년 12월	李龍洵 (26세)	강 원 철원	사회운동	재산 기부 공로, 사 회단체연합장 추진	
4	1927년 12월	白光欽 (34세)	경 남 동래	사회운동, 조선공산 당	단체연합장(7개 단 체) 추진	동래서의 돌연 금지, 추도문 낭독 중 검거
5	1928년 1월	朴元熙 (여, 30세)	경성	여성운동	‘고 박원희 동지 각 사 회단체연합장’(35개 단체) 추진	
6	1928년 1월	朴吉陽 (33세)	경성	사회운동, 조선공산 당	‘고 박길양 동지 사 회단체연합장’의 추 진, 중단	서대문서 금지, 모든 공적 의식 금지
7	1928년	李龍振	경 남	소학교 생	아동 수명의 난타로	“××××× 타살당한

58) 정관진의 경우, 앞서 살펴본 문서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59) 생년과 나이는 공훈록을 따랐다. 당시 신문에는 ‘1896년생, 37세’로 기록되어 있다.

60) 공훈록에는 4월 6일 사망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신문에는 모두 4월 5일 밤 11시경으로 되어 있다.

61) 앞의 동지장 추진 사례와 겹치는 경우는 생략했다.

	2월	(13세)	고성	도	사망, 각단체연합장, 당일 800여 생도 동맹휴교	李龍振之柩” 문구만 떼라고 했으나, 군중 거부
8	1928년 2월	申甲先	경북 김천	농민운동	단체장(금릉농우동맹), 100여 명 회합	
9	1928년 3~4월	崔元胄 (31세)	경남 창원	사회운동, 농민운동	단체장(창원청년동맹 외 9개 단체)	
10	1928년 5월	金榮愛(여)	전북 군산	옥중 남편 金榮律 구호 중 사망	각 사회단체연합장	
11	1928년 12월	宋乃浩 (34세)	경성	대한독립단, 노농운동, 사회운동	사회단체연합장 추진, 중단	종로서 금지, “가족장이라도 공공연하게는 하지 못한다”
12	1929년 5월	姜相元 (28세)	함북 청진	청년운동, 간도 활동	각 사회단체연합장, 300여 명, ‘청진 稀有의 盛葬’	경관의 주의, 중지 연호 속에 폐식
13	1929년 7월	李康夏 (31세)	충남 대전	농민운동	대전사회단체연합장의 추진	
14	1929년 9월	池正松	함북 경성	사회운동	3단체(신간·근우·청맹 지부) 연합장의	
15	1931년 1월	尹炳恒 (39세)	경남 동래	사회운동	재산 기부 공로, 사회단체연합장 추진	
16	1931년 5월	金鐵山 (25세)	함남 원산	간도공산당	사회단체연합장 추진, 150여 명이 화장장에서 시체 탈취 및 시위	원산사에서 무연고로 화장장 직행, 시위대에 경찰 발검, 참여한 부인 검거, 지독한 고문
17	1931년 7월	申貞均 (53세, 여)	경성	애국부인회, 여성운동	사회단체연합장	
18	1931년 8월	全奇煥 (39세)	전북 김제	전북통의부 사건, 노동운동	사회단체연합장	당일 경찰과 충돌, 20여 명 검속
19	1931년 9월	黃尙奎 (42세)	경남 밀양	의열단, 사회운동	‘고 백민 밀양사회단체연합장’, 만여 명 회집	조기·조문·만장 등 압수, 운구 도중 일시 충돌
20	1932년 8월	嚴柱彦 ⁶²⁾	경기 양평	농민운동	협동조합, 야학당 등의 단체장	불온 영결문 낭독, 적기가 합창 등을 취조

위 20건의 단체장 추진 사례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1927년 4건, 1928년 7건, 1929년 3건, 1931년 5건, 1932년 1건으로 나타난다. 동지장이 1927~1930년에 한두 건 정도를 보이다가 1931년부터 다소 늘어난 반면, 단체장은 1930년대 들어 감소하다가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를 동지장이라는 새로운 형태가 대신해갔다고 볼 수 있다.

2. ‘동지장 문화’의 양상과 성격

1920년대 중반 이래 식민지 조선 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동지장 문화’는 1930년대 중반 무렵까지 다양한 형태로 공존하였다. 그러다가 중일전쟁이 일어나 조선 사회 전체가 전시체제로 재편되어가기 시작한 1937년 이후에는 1건도 기사화되지 않았다. 이 시기 들어서는 이른바 ‘애국단체’가 주도하여 전시 여론·선전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 1,000여 명씩 모인 가운데 주로 일본인 전몰자(戰歿者)의 장례를 ‘단체장’이라며 면민장(面民葬), 읍민장(邑民葬) 등의 형태로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⁶³⁾ ‘동지장 문화’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독립운동 진영에서도 확인되며,⁶⁴⁾ 일본의 사회운동 진영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다.⁶⁵⁾ 여기서는 앞의 <표 1~3>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1920년대 중반

62) 엄주언은 「城大教授 三宅鹿之助를 中心으로 한 鮮內 赤化工作事件 檢舉에 關한 件」(京畿道知事, 1934.8.31.), 『警察情報綴 拱(昭和9年)』(한국사 데이터베이스)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63) 「戰歿者團體葬狀況(1938년 12월 현재)」(『治安狀況(昭和 13年, 江原道)』)에는 육·해군 군인 6명의 장례 상황이 기록되어 있다.

64) 예컨대 1935년 11월 22일 민족혁명당 통신원 김병일(金炳鎰, 1912~1935, 關東林)의 장례를 난징(南京)에서 동지장을 치른 것(朝鮮民族革命黨, 『民族革命黨黨報』 4, 1935.11.25.) 등이 확인된다.

65) 1929년 3월 8일 일본 도쿄의 사회주의운동가 야마모토 센지(山本宣治)의 장례를 동지장으로 치렀는데, 이는 “일본에서 처음 보는 비장한 동지장”이었다(「山本氏 同志葬 悲壯盛大, 조선 조문을 많이 압수, 十町에 걸친

부터 1930년대 중반까지 나타난 ‘동지장 문화’의 전체적인 양상과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 사례들에서 1920~30년대까지만 해도 대체로 전통적인 유교식 상장례의 예법에 따라 장례를 치렀음을 알 수 있다.⁶⁶⁾ 간혹 조가나 조악 등에서 부분적으로 기독교식이 가미되기도 했다.⁶⁷⁾ 슬픔과 애도의 공적 표현이었던 동지장과 단체장은 실제로 세부 절차나 내용 면에서 거의 유사했다. 동지장이 다소 약식인 경우가 많고 순서나 내용에서 조금씩 차이는 있어도 영결식은 대체로 개식(開式)·개사(開辭), 묵상, 식사(式辭), 영결사, 조문·조전, 애사(哀辭), 약력 보고, 분향, 영결가·조가(弔歌)·조악(弔樂), 폐사(閉辭)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물론 경찰이 일일이 개입하여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준비된 전 과정을 치른 경우는 거의 없었다.

동지장이나 단체장을 추진한 경우 경제적 처지 등으로 인해 화장을 하거나 공동묘지에 매장하는 경우가 많았음도 알 수 있다. 그런데 화장이나 공동묘지는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인이 그리 선호하는 방식은 아니었다. 유교 사회인 조선에서는 원래부터 화장이 금지되었었고 조선

대행렬], 『中外日報』 1929.3.10.).

66) “유교적 가치체계를 중심으로 한 전통사회에서 죽은 자가 조상신이 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장례 및 천도의례를 포함한 죽은 자를 위한 의례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며, “개신교에서 인간의 죽음은 예수의 부활을 선포하고 확인하는 장이며, 죽은 자가 하나님의 품인 천국으로 가는 과정”이다 (송현동, 「현대 한국의 장례의식에 나타난 죽음관」, 『종교연구』 43, 2006, 146쪽 및 159쪽).

67) 두 차례의 국장 가운데 1919년 고종의 장례는 의례복 등에서 흔히 일본식과 기독교식이 가미된 ‘일본식에 가까운 혼용식’이었고, 1926년 순종의 장례는 ‘조선식에 가까운 혼용식’을 취했다고 한다(김윤희, 「근현대 상례제도와 상례복식의 문화변동 연구」, 28-34쪽). 이상재, 이승훈, 김정래 등의 사회장에서는 장송곡이나 애도곡 등에서 기독교식이 가미되었다(이수정, 「일제강점기 국장(國葬)의 양상 및 성격 - 음악을 중심으로」, 『음악과 현실』 64, 2022, 41쪽).

인에게 묘지와 장례는 “죽은 자를 묻는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인은 일제가 강점하면서 등장한 「묘지규칙」 공포 등을 ‘죽은 자를 통제’한다고 받아들였으며, 공동묘지 신설이나 화장 장려 등의 정책도 장소의 제공이 아닌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그래서 여전히 꺼리는 분위기였지만, 선산이 없는 경우는 선택지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⁶⁸⁾

다음으로 ‘애도할 만한 죽음’에 해당하는 위 사례들 속 인물의 연령대를 보면 대부분 한창 활동 중인 20~40대 초반에 걸쳐 있었는데, 이 점은 남겨진 자들에게 슬픔과 애도의 분위기를 한층 더 배가시켰다. <표 2>의 동지장 추진 사례 24건에서 장순(연령 불명), 김장성(19세), 전협(50세), 강우(70세)를 제외한 20명이 20~40대로서 83.3%에 달한다. 20대가 6명(고광수, 한영섭, 주창엽, 박휘병, 한봉삼, 전창섭), 30대가 8명(이옥, 이정수, 차금봉, 이낙영, 정관진, 이병의, 김태희, 이규운), 40대가 6명(채그리고리, 김순옥, 현정진, 전도, 진병기, 정수기)이다. 또 <표 1>과 <표 3>의 단체장 추진 사례 29건에서도 사망 당시 연령을 파악할 수 없는 5명(장정현, 신갑선, 김영애, 지정송, 엄주언)과 이용진(13세), 신정균(53세), 강경옥(72세)을 제외한 총 21명이 20~40대로서 72.4%에 달한다. 20대가 5명(박순병, 김효종, 이용순, 강상원, 김철산),

68) 일제는 조선을 강점한 직후인 1912년 「묘지·화장장·매장 및 화장취체규칙(墓地火葬場埋葬及火葬取締規則)」(부령 제123호, 총 24개 항, 일명 「묘지규칙」)을 공포하고 1913년 9월 경성부를 시작으로 지역마다 시행함으로써, 조선인의 장묘문화를 미신으로 여겨 척결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기 시작했다. 이는 ‘근대적’ 장묘제도의 출발점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 “조선 총독부가 새롭게 만들거나 한국의 사정에 맞춰 바꾼 것이 아니라, 일본과 대만에서 시행 중이던 법안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시행한 것”이었다(정일영,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 - <묘지규칙>과 공동묘지를 중심으로」, 『역사연구』 25, 2013, 73-83쪽; 정일영, 「일제강점기 『묘지규칙』을 통해 본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간극」, 『한국근현대사연구』 72, 2015, 7-021쪽).

30대가 13명(김사국, 임민호, 김영우, 강택진, 이수택, 백광흠, 박원희, 박길양, 최원주, 송내호, 이강하, 윤병항, 전기환), 40대가 3명(전일, 김영휘, 황상규)이다. 이는 당시 항일운동가로서 고문치사를 당한 인물의 연령대 역시 20~30대가 70%를 훌쩍 넘는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⁶⁹⁾

사망자의 출신지와 활동지는 다양하지만, <표 2>에서 동지장을 치른 지역은 24건 가운데 절반인 12건이 경성이다. 그런데 동지장 자체를 금지해 버린 사례 6건 가운데 5건, 즉 1927년 7월 전협, 1930년 2월 고광수, 1931년 5월 이낙영, 10월 정관진, 1932년 4월 이병의 장례식은 모두 경성에서 거행되었다. 지방의 경우는 1933년 8월에 사망한 밀양의 한봉삼(韓鳳三, 1908~1933) 장례뿐이다. <표 3>의 단체장 역시 공식적으로 금지당한 2건, 즉 1928년의 박길양과 송내호 장례 모두 경성에서 치러진 경우였다. 이로 미루어보아 당시 일제 당국은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경성에서 동지장이나 단체장이 치러져 애도의 형태가 시위운동으로 확산될 것을 특히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동지장 가운데 지방에서 금지당한 유일한 사례인 한봉삼의 장례는 원래 허가를 받아 동지장의위원회를 결성하여 부고장까지 인쇄한 상태였는데, 밀양서에서 갑자기 금지해 장의위원들을 검속하고 부고장 등을 압수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일보>에서 동지장을 ‘거행하였다 한다’는 기사를 ‘거행한다고 한다’로 별도의 정정보도까지 낸 것을 보면,⁷⁰⁾ 이 시기 경남 일대에서 이른바 ‘모종의 사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⁷¹⁾ 지방의 대표적인 동지장 사례로 1933년 3월 고문치사를 당

69) 변은진,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희병 사건’」, 113-114쪽.

70) 「訂正」, <조선일보>, 1933.8.19. 8월 12일의 「反戰事件의 韓鳳三 長逝」라는 기사 내용을 ‘오식(誤植)’이라며 정정 보도했다.

71) 『밀양의 독립운동사』(강만길 편, 밀양문화원, 2003)를 보면, 그즈음 밀양에서는 별다른 사건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봉삼 사망 직전 밀양

한 박휘병(朴輝秉, 1905~1933) 장례를 보더라도, 원산서에서 장의위원들까지 검속해 장례 준비를 방해하고 당일 행사를 엄중히 경계하기는 했어도 동지장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⁷²⁾ 즉 당시 일제 당국에서도 지방의 경우는 굳이 공적 애도를 금지하여 남겨진 자들을 자극하기보다는, 그 준비과정과 장례식 당일의 영결식이나 운구행렬 등 행사 자체에 개입해 주의나 금지를 명하고 중심인물을 검속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표 3>에서 여성 사회운동가를 대상으로 치른 4건의 단체장은 비교적 순조롭게 치른 것으로 보인다. 근우회 등에서 활동한 유명한 여성운동가 박원희와 신정균의 단체장은 경성에서 치러졌음에도 특별히 금지하거나 준비위원들을 검속하는 등의 심한 탄압은 가하지 않았던 것 같다. 특히 박원희 장례는 35개 단체가 연합한 사회단체장으로서 국내외 100여 단체에서 조문과 조전을 보내왔으며, 천도교기념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하고 조악(弔樂)까지 올리면서 운구행렬이 종로를 거쳐 수철리(水鐵里) 공동묘지까지 이어진⁷³⁾ ‘성대한’ 의식이었음에도 특별한 금지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는 비슷한 시기 박길양의 장례에 대해 형사피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공적 의식을 금지하여 신문에서 「시체까지 엄중 경계」라는 기사까지 실은 것⁷⁴⁾과는 대조

출신을 포함한 부산제2상업학교 비밀결사 검거사건이 있었던 것에서(「釜山府를中心으로 檢舉旋風再起」, 《동아일보》 1933.8.2.) 미루어 짐작했다.

- 72) 「元山署員 嚴戒裡에 朴輝秉의 同志葬」, 《동아일보》 1933.3.18.; 「元山署에서 急死한 朴輝秉의 同志葬」, 《조선일보》 1933.3.19. 박휘병의 고문치사와 장례 과정, 유족의 대응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은진,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휘병 사건」, II-2(119-127쪽) 참조.
- 73) 「同志哀悼裡 朴女史永訣, 동지의 눈물 속에 靈柩는 水鐵里로」, 《조선일보》 1928.1.11. 수철리는 현재 성동구 금호동 일대이다.
- 74) 당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1928년 1월 22일 박길양의 가족장에 200여 명

적이다.

여성의 경우는 유일하게 경북 안동의 강경옥 단체장이 치러지는 과정에서 금지 명령이 다수 내려졌다. 강경옥은 3.1운동 이래 풍산소작인회 등을 조직하고 재산까지 다 털어서 소작인회관을 짓는 등 오랫동안 농민운동을 이끌다가 노환으로 사망했다. 그녀는 지역 사회에서 두터운 신망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은 장례식 자체가 반드시 큰 시위운동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았던 것이다. 그래서 원래는 유언대로 풍산시장에 있는 풍산소작인회관에서 영결식을 거행하려 했으나, 경찰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이용하여 시위운동을 한다”라면서 당일 회관 앞의 모든 통행을 금지하였다.⁷⁵⁾ 반면 전북 군산의 김영애는 ‘전북기자단 사건’으로 검거된 남편 전영률(全榮律)을 구호하다가 병을 얻어 사망한 경우로서,⁷⁶⁾ 경찰은 개복동(開福洞) 광장에서 열린 영결식이 큰 시위운동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던 것 같다.

하지만 대체로 활동이 활발한 청장년기 남성 활동가의 사망을 대상으로 한 동지장이나 단체장은 의식을 치르는 모든 과정에서 다수의 금지가 확인된다. <표 1~3>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죽은 자에 대한 일제 당국의 통제와 탄압, 남겨진 자들의 공적 애도 금지는 크게 네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이들이 사망하는 그 순간부터, 즉 시신 자체를 이송하는 과정, 둘째는 장례의 형태가 결정되고 준비되는 과정, 셋째는 동지장·가족장 등 장례 형태를 막론하고 당일 의식이 치러지는 전 과정, 넷째는 장례식 이후의 애도와 추모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금지 조치가 남발되었다.

이 모여들었으나, 경찰은 가족 몇 명 외에는 단 한 명도 상여 뒤를 따르지 못하게 하고 정사복 경관만 행렬에 가담하게 했다(「會葬者까지 禁止한故 朴吉陽의 葬儀, 수백명 회장객은 따르지 못해, 시체까지 엄중 경계」, 《조선일보》 1928.1.23.).

75) 「警察干涉下에 姜女史의 葬儀」, 《동아일보》 1927.10.6.

76) 「金榮愛 女史 聯合葬」, 《동아일보》 1928.5.19.

항일운동가의 경우 활동의 특성상 혹은 경제적 처지 등으로 인해 특정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그래서 가혹한 고문으로 죽임을 당해 시신으로 나오거나 감옥에서 중병을 얻어 죽음의 문턱에서 나오더라도⁷⁷⁾ 앞서 살펴본 전협의 경우처럼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기사가 종종 보도되곤 했다. 이 경우 친지나 지인의 집을 찾거나 그조차 불가능하면 유관 사회단체 건물로 이송되곤 했는데, 당국은 그마저도 금지하기 일쑤였다. 예컨대 검거 후 경찰서 유치장에서 맹장염에 걸려 사망한 박순병(朴純秉, 1901~1926)의 경우 시신을 모시고 빈소를 차릴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사회단체에 두려 했으나 경찰은 어떠한 단체에도 빈소를 차릴 수 없다며 금지했다.⁷⁸⁾

이처럼 최초로 동지장 추진이 확인된 전협이 사례에서부터 위의 네 단계별 금지 조치가 잘 드러난다. 전협의 동지장이 불허되는 과정을 보면, “친우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의식(儀式)을 좀 갖추자는 의견이 많았으나” 종로경찰서에서는 “보통 사람보다 다른 무슨 의식을 갖추는 것은 절대로 금지할 뿐 아니라 빨리 장사를 지내지 아니하면 우리가 가매장(假埋葬)에 붙일 권리가 있으니 알아서 하라.”면서 조기나 만장은 물론 영결식 자체를 금지했다. 가매장하겠다는 엄포까지 받고 영결식도 조기도 만장도 금지된 상태에서 겨우 가족장을 치른 후 미망인은 실신했으며, 며칠간 곡기도 끊고 결국 정신

77) 예컨대 박길양의 경우를 보면, 변호사 김병로(金炳魯)와 이인(李仁)이 보석금 100원을 마련하여 감옥으로 갔으나 이미 사망한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모 변호사는 “감옥에서는 형사피고인의 보석을 꼭 운명할 때에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전 전협이라든지 백광흠이라든지 이번 박길양이라든지 병이 더쳐서 도저히 다시 살아날 수 없을 때에야 보석 허가가 되니 죽은 사람 내어오는 것과 무엇이 다르니까.”라며 매우 분개했다(「鐵窓에서 呻吟한 朴吉陽永眠」, 《동아일보》 1928.1.20.).

78) 「朴純秉氏 葬儀는 社會團體聯合葬 奮鬪와 熱血의 그 一生」, 《조선일보》 1926.8.27.

이상이 되었다. 이후 전씨종약소에서는 ‘위낙 가난하여 갈 곳도 없는 부인’을 위해 치료비로 기부금을 모집했는데, 경찰은 여기에 관계한 종약소 사람들까지 검속해 심문하였다. 당시 공자(公子) 이용길(李勇吉)과 몇몇 ‘조선귀족’의 집에 ‘죽은 뒤에도 전협이 무서우냐’면서 동정금을 내라는 협박성 인쇄물이나 전화가 왔다는 것으로 보아,⁷⁹⁾ 남겨진 동지들의 결집과 활동은 전협의 사후에까지 이어졌다.

당시 경찰이 동지장이나 단체장 자체를 금지하거나, 허가하더라도 일일이 탄압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공적 애도가 대규모의 시위나 폭력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선의 장례식에는 최소한 두 차례의 집회 의식과 운구행렬이 포함되어 있어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 외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수의 동지가 모여드는 동지장이나 단체장은 반드시 시위화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경찰 당국도 앞서 언급했다시피 공적 애도가 “무엇을 상실했는지에 대한 앎”을 자각하게 하여 ‘우리’의 결속을 강화해갈 우려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동지장이 집단 투쟁으로 확대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1931년 1월 제주의 한영섭(韓永燮, 22세) 동지장과 5월 함남 원산의 김철산(金鐵山, 25세) 단체장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주군 신좌면(新左面) 함덕리(咸德里) 출신으로 일본 도쿄에서 활동하던 한영섭이 1931년 1월 15일 사망하여 19일에 제주로 이송되자, 김두성(金斗性) 등 동지들은 동지장을 거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조기로 ‘추도 적혁(赤革) 한영섭의 영(靈)’이라고 쓴 깃발 8개, “불평등한 사회를 파괴하고 무산계급의 자유를 건설하고자 한 군은 죽었으나 군의 주의 정신은 동지인 우리가 승계하여 분투할 테니 안심하라.”라고 쓴 깃발 10개, 기타 ‘젊은 혁명가의 죽음’을 추도하는 깃발 40개를 제

79) 「生前에囹圄 葬式까지監視」, 《동아일보》 1927.7.13.; 「卞夫人의寄附金을 募集한다고 六名檢舉」, 《조선일보》 1927.7.19.; 「李勇吉公子邸에 ‘死全協이 무서우냐」, 《조선일보》 1927.7.20.

작하였다. 장례식이나 대걸리(大厓里) 공동묘지에 매장될 때, 또 운구 과정에서 이 조기를 내걸고 추모했으며, 혁명가를 합창하고 ‘한영섭 만세’를 삼창했다. 이후 3월에는 동지 각자가 기금을 각출하여 앞면에는 ‘동지적광한영섭기념(同志赤光韓永燮記念)’, 뒷면에는 ‘차가운 백색(白色) 아래 억눌린 군집(群集)이여, 높이 올려 투쟁하여 피를 뿌린 동지였다’는 뜻의 문구를 새긴 석비(石碑)를 제작해 마을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세웠다. 그런데 이후 경찰은 ‘한영섭 장례식과 기념비 사건’이라며 다수의 청년을 구속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무덤 속의 관까지 열어서 시신의 옷을 벗기는 등 모욕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마을 공동우물가의 석비도 철거하였다.⁸⁰⁾

다음으로 일명 ‘간도공산당 사건’ 관계자 김철산이 죽음 직전 서대문 서에서 가출옥되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1931년 5월 10일 사망했는데, 경찰은 사망 당일 곧바로 시신을 화장장으로 보내 버렸다. 이에 격분한 원산노동연합회 등의 150여 명은 사회단체장을 추진하기 위해 화장장으로 몰려가서 전화선을 끊고 간수를 감금한 후 철책을 부수고 시신을 탈취했다. 이들이 시신을 둘러메고 ‘××××× 만세’, ‘타도 ××××’, ‘정치범 ××××’ 등을 외치고 노동가를 부르자 시위 행렬은 300여 명으로 늘어났으며, 경찰을 포함한 다수가 부상을 당할 정도로 큰 충돌을 빚었다. 이후 경찰은 발검(拔劍)까지 하여 군중을 해산시키고 다시 시신을 빼앗아서 다음날인 5월 11일에 경찰 단독으로 비밀리에 화장해 버렸다. 그리고 경찰은 독단으로 시체를 병원에서 인수하거나 운반한 사실이 없고, 동지들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경찰이 발검한 사실도 없으며, 이를 보도한 동아일보사 등에 취소 청구까지 했다. 5월 27일 김철산의 부친은 화장하고 남은 아들의 뼈를 추리고 간도에 있던 가족과 친척을

80) 「棺속에 不穩品 너었다고, 故韓永燮墓 發掘令, 판판을 떼고 시체를 뒤져 내어, 濟州朝天駐在所」, 《조선일보》 1931.5.4.; 「赤碑事件 被告, 最高二年 求刑」, 《동아일보》 1931.8.5.

불러서 함북 무산군 풍산동(豊山洞) 북쪽 산에 안장했는데, 참석자는 경계를 서던 정사복 경찰과 10여 명의 조문객밖에 없어서 쓸쓸함을 더 했다고 한다. 이 일로 다수의 동지가 검거되고, 김철산의 부인까지 끌려가 혹독한 고문을 당하였다.⁸¹⁾

이렇게 일제의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공적 애도 행위마저 금지되고 죽은 시신까지 탄압받는 상황은 남겨진 자들에게 큰 모욕감과 훼손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이는 그들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더욱 크게 만들어 “억압받는 계급의 도덕적 투쟁을 지속적으로 동기화하는 추진력”으로 쌓여갔고, 결국은 한층 더 강화되었다. ‘동지장 문화’는 그 자체로서 “사회적 인정 가능성의 한계에 저항하여 일어나는 행동과 발화를 목적으로 도로를 메우는 일종의 결집”으로서 이러한 “신체의 집단적 모임은 어떤 면에서는 민의의 실행”이었다.⁸²⁾ 요컨대 동지장이나 단체장과 같은 공적 애도 의식은 일종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개인적인 무시 경험’이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집단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미론적 다리”로⁸³⁾ 기능했다.

81) 「金鐵山屍體를메고 元山社會團體示威」, 「電話線을 切斷! 鐵櫃부시고 屍體奪回」, 《동아일보》 1931.5.12.; 「遺族, 親知 몰래 警察이 屍體搬移」, 「警察單獨으로 今曉에 火葬!」, 《조선일보》 1931.5.12.; 「消息」, 《동아일보》 1931.5.14.; 「警察이 火葬한 金鐵山遺骸 安葬」, 《조선일보》 1931.6.2.

82) 주디스 버틀러,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220쪽.

83) 호네트는 “개인적 무시 경험이 한 집단 전체의 전형적인 핵심 체험으로 해석됨으로써, 개인적 무시 경험이 행위 주도적 동기로서 인정관계의 확장에 대한 집단적 요구로 나아가는 실천적 과정”이 되는데, “사회운동이라는 비개인적 목표와 각 구성원의 개인적 무시 경험 사이에는 적어도 집단적 정체성 형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미론적 다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했다(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299-300쪽).

IV. 맺음말

한 인간의 마지막 통과의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이합 의식”인 장례는 ‘남겨진 자들’의 슬픔과 애도라는 감정을 바탕으로 치러지는데, 이는 상호 유대관계의 상실감을 바탕으로 한 남겨진 자들의 ‘윤리적 책임감’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인간의 본성과 관습적 윤리성에 기초한 ‘슬픔’과 ‘애도’의 책무마저 훼손당하는 조건이 계속되는 속에서, 3.1운동 이후 이른바 ‘문화통치’의 시기가 열리면서 새롭게 등장한 용어이자 문화적 형태가 바로 ‘(사회)단체장’과 ‘동지장’으로 대표되는 ‘동지장 문화’이다. 주로 항일운동에 종사했던 인물의 ‘공적 애도’를 위해 1925년 단체장이라는 장례 형태가 등장했는데, 이마저도 계속 금지되면서 한 단계 더 굴절된 형태의 ‘집단적 인정투쟁’인 동지장이 등장했다. 이 글에서는 이 시기에 이러한 용어가 출현하게 된 배경, 이것이 하나의 장례문화로 정착해가는 과정, 그 양상과 성격 등에 대해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먼저 ‘동지장 문화’가 출현하게 된 배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일제 당국의 ‘공적 애도’ 금지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었다. 1919년 3.1운동 이래 항일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이 조직화되고 급격히 증가해가면서 ‘제국 일본’이라는 국가권력에 희생된 수많은 죽음을 애도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둘째, 사회장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의 영향이었다. 1922년 ‘김윤식 사회장 사건’ 등을 둘러싸고 ‘애도할 만한 죽음이 무엇인가’의 기준으로 민족 사회에 대한 기여도와 더불어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도덕성 등이 중요시되었다. 이렇게 ‘애도의 배분’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사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에 기초해야 하는 사회장보다는 축소된 범위의 동의에 기초한 새로운 공적 애도의 형태가 필요했다. 셋째,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서 장례비용 등의 공적 마련

이 요구되었다. 순국한 항일운동가의 절대다수는 오랫동안 생업이나 주거도 일정하지 않고 가족조차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극빈한 처지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신문 기사 등을 통해 드러난 동지장 추진 사례 총 24건(1927~1936)과 단체장 추진 사례 총 29건(1925~1932)을 중심으로 시기, 지역, 금지 상황 등의 현황과 양상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러한 공적 애도와 추모의 과정이 남겨진 자들의 결속을 강화해가는 과정과 성격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일제 당국이 동지장이나 단체장 자체를 금지한 것은 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경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방의 경우는 주로 당일 장례 의식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당국의 공적 애도 금지는 크게 네 단계에 걸쳐, 즉 첫째, 사망 직후 시신을 이송하는 과정, 둘째, 장례의 형태가 결정되고 준비되는 과정, 셋째, 동지장이든 단체장이든 가족장이든 그 형태를 막론하고 당일 장례 의식이 치러지는 전 과정, 넷째, 장례식 이후의 애도와 추모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있었다. 그 이유는 조선인의 이러한 공적 애도가 남겨진 자들의 결속을 강화하여 대규모의 시위나 폭력 행동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일제의 탄압과 고문으로 죽임을 당한 상태에서 공적 애도 행위마저 금지되고 죽은 시신까지 통제되던 상황은 남겨진 자들에게 큰 모욕감과 훼손감을 안겨주었다. 이는 그들의 비통함과 애절함을 더욱 크게 만들었고 한층 더 결속을 강화시켰다. 동지장이나 단체장과 같은 공적 애도 의식은 일종의 ‘권리를 가질 권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개인적인 무시 경험’이 사회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즉 ‘집단적 정체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의미론적 다리’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논문접수 : 2023.12.24., 심사시작 : 2023.12.24., 심사완료 : 2024.01.17.]

<참고문헌>

- 《조선일보》, 《동아일보》, 《시대일보》, 《중외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등
- 京城鐘路警察署長, 「刑ノ執行停止處分者死亡ニ關スル件」, 1931.10.21., 『思想에 관한 情報 1』.
- 京城鐘路警察署長, 「刑ノ執行停止者死亡ニ關スル件」, 1931.10.22., 『思想에 관한 情報 1』.
- 宇都宮太郎(朝鮮駐劄軍司令官), 「不逞鮮人 傷害致死의 件 報告」, 1919.5.30. 『朝鮮騷擾事件關係書類(1)』.
- 京畿道知事, 「城大教授三宅鹿之助를 中心으로 한 鮮內赤化工作事件 檢舉에 관한 件」, 1934.8.31., 『警察情報綴 拱(昭和9年)』.
- 「戰歿者團體葬狀況(1938년 12월 현재)」, 『治安狀況(昭和 13年, 江原道)』.
- 金明植, 「社會葬은 何?」, 『新生活』 1, 1922.3.1.
- 「天下大小人物評論會」, 『三千里』 제8권 제1호, 1936.1.
- 朝鮮民族革命黨, 『民族革命黨黨報』 4, 1935.11.25.
- 김광재, 「安泰國의 순국과 장의 - 1920년대 초 上海 한인 장례문화의 일 단」, 『역사민속학』 48, 2015.
- 김시덕, 「상장례」, 『한국일생의례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16.
- 김윤희, 「근현대 상례제도와 상례복식의 문화변동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석사논문, 2018.
- 김현주, 「김윤식 사회장 사건의 정치문화적 의미」, 『東方學志』 132, 2005
- 박종린, 「‘김윤식사회장’ 찬반논의와 사회주의세력의 재편」, 『역사와 현실』 38, 2000
- 변은진, 「신문기사를 통해 본 일제 ‘문화통치기’ 고문치사 사건(1920~1936)

- 」, 『남도문화연구』 47, 2022
- _____, 「1920~30년대 항일운동가 고문치사 문제와 ‘박휘병 사건’」, 『역사연구』 40, 2023
- 孫炯富, 「植民地時代 宋乃浩·琪浩 兄弟의 民族解放運動」, 『國史館論叢』 40, 1992
- 송현동, 「근대이후 상장례정책 변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역사민속학』 14, 2002
- _____, 「현대 한국의 장례의식에 나타난 죽음관」, 『종교연구』 43, 2006
- 스테파니 테구이어 외, 『권리를 가질 권리』, 위즈덤하우스, 2018
- 악셀 호네트,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윤덕영, 『세계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운동』, 해안, 2023
- 이수정, 「일제강점기 국장(國葬)의 양상 및 성격」, 『음악과 현실』 64, 2022
- 이철영, 『근대 이후 유교식 상례의 변화 이해』, 해조음, 2020
- 임경석, 「윤양 김윤식의 죽음을 대하는 두 개의 시각」, 『역사와 현실』 57, 2005
- _____, 「한국의 첫 사회장은 왜 실행되지 못했는가」, 『내일을 여는 역사』 25, 2006
- 정일영, 「일제시기 장묘제도 변화의 의미」, 『역사연구』 25, 2013
- _____, 「일제강점기 『묘지규칙』을 통해 본 식민자와 피식민자의 간극」, 『한국근현대사연구』 72, 2015
- 정종현, 「京都의 조선유학생 잡지 연구」, 『민족문화연구』 59, 2013
- 주디스 버틀러 지음, 윤조원 옮김, 『위태로운 삶』, 필로소픽, 2018
- _____, 김응산·양효실 옮김, 『연대하는 신체들과 거리의 정치』, 창비, 2020
- Juljan BIONTINO, 「윤치호의 ‘죽음’과 장례문화 인식」, 『민족문화연구』 66, 201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학종합연구센터, 『세계의 장례문화』, 한국외국어
대학교 출판부, 2006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옮김, 『전체주의의 기원』 1, 한길사, 2006

황기진, 『표준의례해설』, 문화당, 1962

<Abstract>

**Background and Characteristics of the
‘Dongji-Jang(comrades-led funeral) Culture’
in Japanese colonial era**

Byun, Eun-jin

Funerals, the last rite of passage for a human being, are held based on the feelings of sadness and mourning of those who are left behind. This is based on the ‘ethical responsibility’ of those left behind based on the sense of loss of mutual ties. However, amid conditions that even the responsibilities of ‘sadness’ and ‘adoration’ based on human nature and customary ethics are undermined, new term and cultural form that emerged in the mid-1920s are ‘Dongji-Jang Culture’, that is ‘Danche-Jang(social organizations-led funeral)’ and ‘Dongji-Jang(comrades-led funeral)’.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summarizes the background of the emergence of the term ‘Dongji- Jang’ in Japanese colonial era, the process, pattern, and nature of it being established as a funeral culture. First, we looked at three main reasons for the emergence of the ‘Dongji-Jang Culture’. The first was in response to the Japanese authorities' ban on ‘public mourning’, the second was the influence of critical public opinion against the public funeral, that is ‘distribution of mourning’, and the third was a direct issue to prepare for public expenses such as funeral expenses. Next, focusing on 24 cases(1927-1936) of the promotion of Dongji-Jang and 29 cases(1925-1932) of the promotion of Danche-Jang, the current status, pattern, and nature of the prohibition situation were comprehensively

examined. Through this, it was confirmed that this public mourning ritual belonged to a kind of ‘the right to have rights’ and that ‘personal experiences of neglect’ had the character of ‘semantic bridges that could enable collective identity’ that could move toward social movements.

Key words : public mourning, Dongji-Jang(comrades-led funeral), Danche-Jang(social organizations-led funeral), public funeral, distribution of mourning, the right to have rights, Japanese colonial era